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 유럽 · 러시아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유럽연합

제1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4
제3절 통관시 유의사항	23
제4절 통관부서 연락처	25
제5절 자료출처	26
제2장 검역제도	31
제1절 검역제도 일반	31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35
제3절 자료출처	40
제3장 관세제도	41
제1절 관세제도 일반	41
제2절 품목별 관세제도	42
제3절 자료출처	44
제4장 라벨링제도	45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45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47
제3절 라벨링 사례(한국산 사례는 없음)	53
제4절 자료출처	54
제5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55
제1절 2015년 불합격 사례	55

제6장 수출현안	59
제1절 수출현안	59
제2절 자료출처	62



러시아

제1장 통관제도	65
제1절 통관제도 일반	65
제2절 통관제도 특징	81
제2장 검역제도	83
제1절 검역제도 일반	83
제2절 수입제한 현황	114
제3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119
제4절 對러시아 수출업체 등록	128
제3장 관세제도	131
제1절 관세제도 일반	131
제2절 관세제도 변동사항	134
제4장 라벨링제도	141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41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147
제3절 라벨링 사례	152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모니터링

목 차

C O N T E N T S

제4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153
제5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157
제1절 2015년 검역 불합격 사례	157
제6장 수출현안	161
제1절 식품금수조치 현황	161

주요국 변경사항 요약

■ EU(유럽연합)

□ 수출현안

- '16.5.1부터 유럽연합 통관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각 회원국 행정시스템 연결할 예정

□ 관세제도

- 한-EU FTA 발효 5년 차가 시작되는 '16.6.1일부터 양허 제외인 특정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됨

■ 러시아

□ 검역제도

- '15.9.1부터 HS코드 10자리 세부품목 4,061개에 대한 관세율 인하
- 2016년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영역 반입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활당량 확정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유럽연합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6장 수출현안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관리 법률체계

□ 대 EU 기본 수출입 관련 법

- 2013년 6월 EU에 합류한 크로아티아를 포함 2015년 현재 총 28개국이 가입된 유럽연합은 각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출입 법규를 통일하여 동일한 통관 및 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EU 국가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건(서비스 포함)은 EU 회원국에 관세 장벽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공표한 수출·입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한편 유럽연합은 가격 담합 및 덤핑 및 시장 독점 등과 같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금지하고 있음
- EU 28개 회원국 상세는 아래와 같음
 - 벨기에 / 체코 / 페로 제도와 그린랜드를 제외한 덴마크 /
 - 헬골란드 섬 및 뷔지겐을 제외한 독일 / 에스토니아 / 아일랜드 /
 - 그리스 / 세우타와 멜릴라를 제외한 스페인 /
 - 뉴칼레도니아, 마요트 섬, 생피에르미클롱, 윌리스푸투나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을 제외하나 과들루프섬 해외지부, 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니크 및 리유니언 제도를 포함하는 프랑스 /
 - 리비노, 캄피오네디탈리아 시, 폰테트레사와 포르토세레스이아 사이 지역의 강 기슭과 국경 사이에 위치한 루가노 호수를 제외한 이탈리아
 - 사이프러스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 헝가리 / 몰타
- 유럽 내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슬로베니아
- 슬로바키아 / 핀란드 / 스웨덴
- 영국, 북아일랜드, 체널 제도와 맨섬 / 크로아티아
- 회원국의 영토 밖에 위치한 다음 영토와 영해, 내수 및 영공 또한 EU 관세 지역의 일부로 간주됨 - 모나코 공국의 영토 / 사이프러스에 위치한 아크로티리 와 데켈리아 영국군 독립 기지

☐ EORI 번호 (EU 인증 수출자번호)

-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는 수출입업자의 세관등록 번호를 의미함
- EORI 는 2009년 7월 1일에 EU 전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EORI 번호는 EU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기업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번호임
- 관세 납부를 위해 1개 회원국에 등록한 수출입업자는 EU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EORI 번호를 취득 할 수 있음
- EU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수출입업자는 통관, 수입화물정보(ENS)나 수출화물정보(EXS)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EORI 번호를 받게 됨

☐ 상품 분류 변경 사항

- 개요 : EU 집행위는 상기 Regulation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품을 분류 하였으며 동 규정은 관보게재일(2014.7.16)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됨

○ 상세내용

- 첫 번째 칸에 묘사된 상품은 두 번째 칸의 CN 코드로 분류됨

상품명세	분류 (CN code)	분류이유
누르스름한 가루로 채워진 무색의 캡슐로 소매판매용 플라스틱 병에 캡슐 60개 단위로 라벨링 되었으며 다음 성분을 함유: - 글루코사민 염산염 (300mg) - 황산콘드로이틴 - 메틸 솔포닐 메탄 - 소량의 아스코르브산 에테르 (비타민 C)	유지방, 자당, 아이소글루코오스, 포도당 및 전분을 포함하지 않거나, 중량에 의해 1,5% 이하의 유지방, 5% 이하의 자당 또는 아이소글루코오스, 5% 이하의 포도당 또는 전분을 포함한 조제 식품 (2160 90 92)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2106, 2106 90, 2106 90 92에 의해 분류됨 일일 섭취량을 고려할 때 예방 또는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CN 코드 3004, 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상품은 일정량 형태의 조제식품으로서 식품보충제로 목적으로 사용이 됨으로 CN 코드 2160, 조제식품으로 분류됨
아래 성분으로 구성된 냉동과일(무게비중 %): - 딸기 55 - 바나나 20 - 파인애플 15 - 블루베리 10 상품은 믹스기로 혼합할 수 있는 조각형태의 냉동과일로 봉투에 담겨져 있음	설탕이 중량의 13%를 넘지 않는 초본류 딸기 (0811 10 90)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3(b)조항, 6조항 및 CN 코드 0811, 0811 10, 0811 10 90에 의해 분류됨 상품은 여러 종류의 냉동과일 혼합물로 딸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0811 10 90, 딸기류로 분류됨
소매판매용 200ml, 500ml, 1000ml 병에 담겨있는 액체로 다음 성분을 함유: - 염화나트륨(0,9%) - 멸균수 각 병은 인체공학적 세안컵과 뚜껑을 장치하고 있으며 일회용으로 사용 라벨에 따르면 상품은 비상시에 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눈 세척용으로 사용	기타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따로 분리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 (3307 90 00)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3307, 3307 90 00에 의해 분류됨 상품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판매 형태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 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3307, 기타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됨
소매판매용 200ml, 1000ml 병에 담겨있는 액체로 다음 성분을 함유: - 인산나트륨(1-5%) - 인산칼륨(1%)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3307, 3307 90 00에 의해 분류됨

상품명세	분류 (CN code)	분류이유
- 멸균수 각 병은 인체공학적 세안컵과 뚜껑을 장치하고 있으며 일회용으로 사용 라벨에 따르면 상품은 비상시에 이 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눈 세척용으로 사용		상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구성요소의 분리체가 아니므로 CN코드 2835, 인산염으로 분류되지 않음 상품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판매 형태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 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3307, 기타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됨
조리된 건조국수(약 65g), 조미료(3,4), 식용유(2g), 건조채소(0,8g)로 구성된 상품 상품은 국수 조제품으로 소매판매용으로 포장 라벨에 따르면 상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추가해야 함	기타 건조 파스타 (1903 30 10)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3(b)조항, 6조항 및 CN 코드 1902, 1902 30, 1902 30 10에 의해 분류됨 국수가 상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CN 코드 2104, 스프로 분류되지 않음 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1902, 파스타로 분류됨

2. 통관수속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키징 리스트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를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통관 의뢰
- 통관 의뢰를 맡은 운송회사 또는 통관 전담 회사에서 수입 신고서 작성
- 수입 신고서를 근거로 해당 관세를 납부 후 통관 완료 됨
- 네덜란드로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 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5일, 육로나 항공 송 수입품은 2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통관에는 대체로 2~3일 소요되며 통관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음
출항 → 입항 → 하선 (보세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납부

■ EU 수입 통관 절차 ■

1.물품도착전	2.물품반입	3.수입신고	4.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적하목록사전제출			
	보세구역물품반입 도착보고 하역 및 검사		
		수입신고 신고서처리	
			관세납부 보세구역물품반출

(자료 : tradenavi.or.kr)

3. 화물의 통관

가. 수입 신고서의 종류

-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
제 3국(유럽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한 후 제3국에 운송하는 경우에도 T1 수입신고서 작성함
-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이 양식을 사용함

나. 온라인 통관제도

-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제 3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위하여 온라인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온라인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 세관이

제공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직접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온라인 통관신청 가능

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E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 제3국에서의 수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 안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가 거래되었을 때도 적용됨
-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가 국가에 제공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국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세금과도 관계가 있음
-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를 넘어야하며, 1개 또는 2개의 감면부가가치세율(단 5%는 넘어야함)을 각국이 지정할 수 있음
-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15.07) ■

(단위 : %)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9
체코	21	10 / 15
덴마크	25	
독일	19	7
에스토니아	20	9
그리스	23	6.5 / 13
스페인	21	10
프랑스	20	5.5 / 10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크로아티아	25	5/13
아일랜드	23	9 / 13.5
이태리	22	10
사이프러스	19	5 / 9
라트비아	21	12
리투아니아	21	5 / 9
룩셈부르크	17	8
헝가리	27	5 / 18
몰타	18	5 / 7
네덜란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폴란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루마니아	24	5 / 9
슬로베니아	22	9.5
슬로바키아	20	10
핀란드	24	10 / 14
스웨덴	25	6 / 12
영국	20	5

4. 원산지 규정

가. 개요

- 한-EU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러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임
- 특히 한-EU FTA 의 경우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재료 조달방식이나 해외가공 공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인증 수출자

- 6,000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28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의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신고가 가능함
-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EU 수입 통관 시점 2년 내에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특혜 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음

다.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함
- 통상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당해 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는 실질변형기준을 적용 함
- 또한 위와 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됨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사업품이 주로 해당 됨

Ⅱ 완전 생산 기준

구 분	내 용
광물성 생산품	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
식물성 생산품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산 동물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 당사국 영역에서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한 상품 - 당사국 영역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한 어로로 획득한 상품과 배타적으로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 실질변형기준

○ 세번 변경 기준

- 당해 제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당해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사용되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많은 가공 등을 하여야 함으로 요건 충족이 용이하지 않음
(예 : 미삼 (HS 12류) → 인삼엑기스TM (HS 13류) / 2단위 “류”가 변경)
- 한편, 불인정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이 불필요 함

○ 부가가치기준

- 비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한-EU FTA에서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사용비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장도가격은 최종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다만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함

Ⅱ 부가 가치 기준

구 분	내 용
제품 기준 가격	EX-Works (공장도 가격)
계산 공식	비원산지재료 가격 / 제품의 공장도 가격 x 100

- 한-EU FTA에서는 그동안 EU 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견지해 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동시 충족) 대신에 많은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충족)을 채택함

5. 구비서류

가. 수입 통관 필요 서류

-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가 구비되어야 함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 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식품의 관세분류번호 (TARIC CODE = HS CODE /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운송회사 혹은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등은 전담 업체에서 준비함
- 수입통관신고는 수입금액이 만 유로가 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며 DV1라고 불리는 서류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통관시 제출해야함
- 커미션이나 저작권료가 있는 상품의 경우, 인보이스 상에 그 금액을 포함하여

함께 계산되어야하며, 만유로 이하 또는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제외되기도 함

나. 수입 금액별 (6,000유로 기준) 서류작성

☐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 판매가가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협정 세율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이 추가된 FTA 인보이스가 필요함
- 원산지 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customs authorization none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EXPORTER SIGNATURE AND NAME
 - (1) 해당 국가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 기재하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칸으로 남겨둠
 - (2) 원산지 입력

☐ 6,000유로 이상인 경우

- 수출국가에서 인증한 수출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출자 관리번호와 함께 위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1. 일반 포장제품

가. 통관 구비서류

- 일반 포장제품 통관 시에도 선하증권 (B/L), 인보이스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경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을 준비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나. 물품 검사

-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 함
-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 서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 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 (excise), 부가가치세는 통관 절차 때 지불
-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 함

다. 통관 시 적용되는 기준

☐ 상품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 됨

- EU 28개 회원국은 모두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 (CN CODE)가 적용 됨
-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 될 수 있으며,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함
-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함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임

□ 관세부과액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 됨
-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 개발비 등) 들도 있음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됨

2. 젓갈류

가. 대 EU 젓갈 수출시 유의사항

- 한국산 젓갈류(CN 1604, 1605)는 집행위 결정 제2007/275/EC호에 의거, 수입 통관시 검역대상이 되고 있음
- EU 식품통관 안전규정은 개별 회원국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음
- EU는 사전 허가된 선박 및 가공시설에서 처리된 수산가공품만 수입을 허용
- 한국 내 EU 허가를 받은 가공시설은 2013년 5월 기준, 동원, 사조 등 316개에 달함
- 소량의 수입이라도 2kg을 상회할 경우 반드시 선적 전 요건확인을 구비해 통관 시점에 제시해야 함
- 한국의 개별기업이 EU에 수산가공품 수출을 희망할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사전검사 및 인증 획득 필요
- EU의 젓갈류 수입을 위한 사전조치, 유통 및 사후관리는 엄격하나 기타 미생물, 질소, 타르 등 함량에 대한 규제는 없음

나. 젓갈류 등 수산가공식품내 미생물 함유기준 관련 EU 주요기준

■ 젓갈류 미생물/독성 함유 기준 (규정 제1441/2007호) ■

구분	검사대상 미생물 및 독성물질	표본개수		허용치		검사방법	검사시점
		n	c	m	M		
Fishery products from fish species associated with a high amount of histidine (17)	Histamine	9(18)	2	100 mg/kg	200 mg/kg	HPLC (19)	판매 유효기간까지 수시
Fishery products which have undergone enzyme maturation treatment in brine, manufactured from fish species associated with a high amount of histidine (17)	Histamine	9	2	200 mg/kg	400 mg/kg	HPLC (19)	판매 유효기간까지 수시

(17) 고등어(Scombridae), 청어(Clupeidae), 멸치(Engraulidae) 등 포함

(18) 샘플 크기는 소매판매용 단위포장 기준

(19) 측정법 : biogenic amines involved in fish decomposition

* 약어 : n(표본 추출개수), c (최소 유효표본수), m (최소허용치), M (최대허용치)

3. 건강식품

가. EU, 건강식품과 관련된 광고문구 규제화

- EU는 '12년 12월부터 건강식품과 관련 식품 라벨이나 광고, 홍보물에 집행위가 승인한 카피문구만 사용하도록 정하여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식품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12년 5월 16일 EU 집행위는 건강식품의 라벨과 광고 선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카피문구(222개)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리스트에 없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함
- EU가 건강식품 관련법(1924/2006)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건강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피문구 리스트(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함(1924/2006법에는 집행위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마련하도록 명시됐음)
-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첫째 2008년에 유럽 식품청(European Food Authority)이 각 회원국에서 접수한 카피문구가 4만4000개나 돼, 이를 일차적으로 추린 후 4600개의 합당성을 심층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다가 EU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의 토론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음
- 식품업체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222개의 카피문구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용될 수 있음

나.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내용

- 카피문구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나 물질이 인체 성장발육과 발달, 일정한 인체 기관의 기능에 작용하는 역할

☐ 심리적 또는 행동심리적면에서의 기능

☐ 살 빼는 기능, 체중조절기능, 배고픔을 약화시키는 기능, 포만감 강화 또는 섭취 열량 감소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그러한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학적 입증에 근거를 두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들임

☐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예

- 칼슘은 뼈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 콜레스테롤의 정상수준 유지에 좋다
- 소금섭취를 줄이면 정상적 혈압 유지에 좋다
- 식물스테롤(plant sterols)과 식물스타놀(plant stanols)는 콜레스테롤의 정상수준 유지에 좋다(이 두 식물은 마가린과 야구르트에 사용됨)
- 호두는 혈관의 신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오메가3 알파 리노레닉산은 혈액의 정상적 콜레스테롤 수준 유지에 도움을 준다
- 비타민 D는 뼈 건강 유지에 좋다
- 비타민 C는 정상적 신경 기능에 좋다 등임
- 영양(nutrition)관련 대표적인 허용 단어는 아래와 같음

주요 허용단어	설 명
low energy Energy-free	40kcal(170KJ)/100g 이하의 일반식품 20kcal(80KJ)/100ml 이하의 음료(액체) 식품
Low fat	3g/100g 이하의 지방 함유 (일반식품) 1.5g/100ml 이하의 지방 함유 (음료/ 액체 식품)
Fat-Free	0.5g/100g 또는 100ml 의 지방 함유 식품
Low Saturated fat	1.5g/100g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 (일반식품) 0.75g/100ml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 (음료/ 액체 식품)
Saturated fat-Free	0.1g/100g 또는 100ml 이하의 포화지방(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

주요 허용단어	설 명
Low Sugars	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Sugars-Free	0.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Low Sodium/Salt	0.12g/100g 또는 100ml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Sodium-Free or Salt-Free	0.005g/100g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Source of fibre	최소 3g/100g 또는 1.5g/100kcal 의 섬유질 포함 식품
High protein	제품의 최소 20%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 식품
그 외	High XXX, Contains XXX, Reduced XXX => 영양소의 이름을 뒤에 넣어 사용가능 (예: High of Vitamin)

다. 건강식품과 관련된 카피문구 규제

☐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 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사용은 금지됨

☐ 금지된 카피문구의 예

- 그린 티(녹차)는 정상 혈압유지를 도와준다
(Green tea helps maintain normal blood pressure)
- 로얄 젤리는 면역성, 원기향상에 좋다
(Royal jelly benefits the immune and/or vitality).
- 비타민과 미네랄과 혼합된 타우린(활력음료수에 함유)은 정신건강에 좋다
(Taurine, when combined with vitamins and minerals, boosts mental performance)
- 글루코사민은 관절 건강에 좋다
(Glucosamine helps maintain joints) 등임

라.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집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서 제출

- 업체는 해당 판매시장 회원국 당국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벨기에 식품안전 검사기관 AFSCA)에 과학적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회원국 당국은 2주 내로 EU 식품청에 신청 건을 통보
- EU 식품청은 이를 여타 회원국과 집행위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
- 집행위는 EU식품청의 의견을 조회한 후 특히 중소기업에는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평가서류 준비와 관련 조연과 기술적 방법을 제시함

☐ 유럽식품청은 유효한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개월 내로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함

☐ 신청서 제출집행위는 유럽식품청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집행위 결정 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채택되면 즉시 신청자에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발표함(기존 포지티브리스트에 승인받은 리스트 추가)

☐ 유럽식품청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집행위는 이를 신청자에 통보함

☐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자명, 주소
- 신청 대상의 영양소 또는 물질, 또는 식품, 식품 카테고리 및 특성 서술
- 업체 자체 연구결과 사본
- 업체가 카피문구에 대한 독점 소유권을 원할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동반 제출

-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외부 연구 결과 사본
- 카피문구제안과 필요시 특별 사용 조건
- 신청이유 요약 등임

마. 시사점

- ☐ 건강식품, 어린이용 식품과 같이 카피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제품에 관해서 법규를 어기고 판매될 시 판매 금지 및 수거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라벨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 포지티브 리스트와 관련 카피문구와 사용조건에 관한 집행위 사이트
<http://ec.europa.eu/nuhclaims/> 참고

4. 유기농(Organic) 식품

- ☐ 한국 유기농 제품의 EU 수출길 확대
 - 2014년 7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은 양자간 유기농 식품 동등성 협의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마침내 2015년 2월 1일부로 한국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서로도 EU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협정을 발표함 (관련 : EU 2015/131 of 23 January 2015)
 - 가공처리된 식품 중 95% 이상의 유기농 재료가 쓰인 것들에 한해서 유럽연합으로 수출될 수 있는 유기농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

가공처리된 (processed) 식품 예	비가공처리(unprocessed) 식품 예
- 다양한 혼합 식품 (견과류, 말린 과일, 냉동 야채) - 치즈, 절인고기, 소시지, 베이컨 - 아기용 음식, 영아용조제분유 - 저온 살균한 제품 (우유, 과일주스) - 커피, 차 - 꿀, 초콜렛, 와인, 맥주	- 신선 과일 및 야채 - (다른 채소류와 혼합되지 않은) 냉동 콩류 - (다른 과일류와 혼합되지 않은) 말린 망고

- EU에 수입되는 한국산 유기농 제품에는 한국 또는 EU의 유기농 인증 마크가 라벨(또는 패키징)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원산지, 제조사 이름, 연락처, 포장지 회사 정보, 유기농 인증서 발급 기관명 그리고 인증서 번호가 라벨에 기입되어야 함

EU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부착된 식품	로고 상세
	 - EU 유기농 인증 마크 및 인증번호 기입 - 제 3국가 (Non EU product)에서 생산되었음을 언급

- 다양한 유기농 식품의 구매가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판매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산 유기농 제품의 활발한 수출을 위해서는 상품 개발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요구됨

제3절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표기 강화 요망

- EU는 인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표기(Labelling) 법규를 적용
-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기해야 함
- 성분 대부분은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포장 라벨에 기록되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고와 리콜조치 적용

알레르기 항원 표기 예 1.



알레르기 항원 표기 예 2.



□ EU 등 전 세계적으로 Allergen 관련 식품 규제 더욱 강화 예정

-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개정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라벨링 규제 개선을 통해 모든 공급업체에 제품 성분 표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임
- 한국기업이 유럽 식품시장 진출 확대 위해서는 정확한 Allergen 표기 필수
-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한국 식품의 Allergen 성분 미 표기로 인한 해당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 및 리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
 - Allergen 성분 미 표기로 인한 경고 및 리콜 조치와 레이블 재제작은 해당 제조·유통기업에 비용과 시간적으로 손해. 이미지 하락과 Allergen 성분 미 표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됨
-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 Allergen 성분 미 표기는 고의적이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와 Allergen 성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발생
 - 일례로 고추장은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콩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매우 생소한 정보임
- 유럽에서는 Allergen 성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더욱 넓게 퍼져 있고 규제도 더욱 까다로운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함

제4절 통관부서 연락처

1. 국가별 검역원 현황 및 담당자 내역 등/ 웹사이트

국가명	웹사이트 & 문서	국가명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http://www.bmg.gv.at	이탈리아	http://www.salute.gov.it/ministero/sezMinistero.jsp?label=uffici
벨기에	http://ec.europa.eu/food/animal/bips/bips_contact_en.htm 문서참조 (이하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리투아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불가리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룩셈부르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사이프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라트비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체코	http://www.svscr.cz	몰타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독일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네덜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덴마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폴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에스토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포르투갈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그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루마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페인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웨덴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핀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베니아	http://www.vurs.gov.si/en/veterinary_administration/organisation/border_inspection_posts/
프랑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바키아	http://www.svssr.sk/sk/adresy/Hranice.asp#1
헝가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영국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아일랜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위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노르웨이	http://www.mattilsynet.no/english/import_export		

제5절 자료출처

1. 웹사이트

- ☐ EU 제 13조 조항 원문

<http://ec.europa.eu/nuhclaims/resources/docs/euregister.pdf>

- ☐ 유럽연합 수입제도 규정

<http://ec.europa.eu/trade/import-and-export-rules/import-into-eu/>

- ☐ 유럽연합 통관제도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 ☐ 유럽연합 수출입 절차 및 정책 <http://ec.europa.eu/trade/>

- ☐ 유럽연합 유기농 제품 관련 공식 웹사이트 :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

- ☐ 한-EU 오가닉 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trade/n-on-eu-trading-partners/countries/korea_en.htm

- ☐ 한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http://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2. 관련법규

□ EU, 국가별 수입 규제 현황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540220	폴리에스터 고강력사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AD(규제종료)	2009-09-08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우회덤핑)	AD(규제중)	2009-08-12
7219,31.0000, 32.1000, 9000, 33.1000, 9000, 34.1000, 9000, 35.1000, 9000, 7220,2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cold-reduced))	AD(규제종료)	2008-02-01
2804.69	실리콘(Silicon) (우회덤핑)	AD(규제중)	2006-03-06
854011	컬러TV용브라운관 (CPT, Cathode-ray Color Television Picture Tubes)	AD(규제종료)	2006-01-11
8418.1	양문형 냉장고 (Side by Side Refrigerator)	AD(규제종료)	2005-06-02
8542,21,2010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 모든 유형의 DRAM과 densities 및 파생품	CVD(규제종료)	2002-07-25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 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AD(규제중)	2001-06-01
3920.62.00.00	PET Film(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탄력성 마크네틱 디스크와 광증합 프린팅 플레 이트 관련 필름은 제외)	AD(규제종료)	2000-05-27
3907.6	PET CHIP(*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데 쓰이는 중 간재)-페트병, 페트필름, 폴에스텔 제조원료	AD(규제종료)	1999-11-06
5503.20.1000, 9000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Synthetic fibers of polyesters)- 쿠션, 자동차 시트, 자켓 등의 섬 유제품의 기초재료	AD(규제종료)	1999-10-07
8528-12-9010, 9020,9030,904 0,9050,9060	컬러 TV(17" 이하 및 18" 이상)	AD(규제종료)	1988-02-17

□ 농수산물식품 對 EU 수입 거절시 대응요령

- 신속한 대응 필요
- 수입품에 대한 농수산물식품 검역을 규정하는 EU규정 882/2004 제5장(Chapter 5)의 54항[Article 54-(3)]은 회원국이 기업에게 항소 절차와 기한 등을 안내할 의무를 명시함
- 회원국 단위세관, 검역당국 등이 EU규정에 명시된 절차(샘플링, 테스트 법, 항소절차 안내여부)를 따랐는지도 요청해야 함
- EU의 유해물질 발견 시 조치
- 아플라톡신 등 일부물질은 집행위 규정 669/2009에 견과류 내 요주의 물질로 분류되어있어, 견과류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 시 아플라톡신 검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음
- EU의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아플라톡신 관련 중국, 가나, 인도 등 다수 적하물이 수출자에게 재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따라서 관련 수입품은 특별한 주의가 요청됨

□ 물류보안 인증제도

-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미국이 반테러 미·관 협력제도를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이후 세계세관기구(WCO)와 국제표준기구(ISO) 등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WCO의 제도를 수용한 기업 물류보안 인증제도(AEO)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물류 전 구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기업)에 대해 보안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검사 횟수를 줄여주거나 통관 감사 자체를 생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장 함

- EU의 AEO 가이드라인은 Part 1, Part 2, Part 3로 구성되어 있음
 - Part 1은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 의 심사와 혜택, 국제공급사슬과 보안개념, AEO 지원서 제출지역,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 Part 2는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 인증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과 각 평가 기준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언급
 - Part 3은 공급사슬에서의 활동주체 즉 제조기업, 수출업자, 포워더, 창고운 영자, 운송사, 관세사, 수입업자 등이 AEO 인증시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을 설명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물류보안 인증제도 ■

구 분	제 도	시행시기
국제관세기구	WCO Framework	2005.06
ISO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Chain	2007(PAS : 2005)
미국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002.04
EU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008.01
싱가포르	STP(Secure Trade Partnership)	2008.10

3. 관련 책자

-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통한 입법화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한상필)
- 주간 EU 동향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korean/eu/missiontoeu/eu/news/index.jsp>
- EU 정책 브리핑 2차 개정판, 2010 /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t.go.kr/korean/eu/missiontoeu/data/book/revision2/index.jsp>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 개요

-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됨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감독함
-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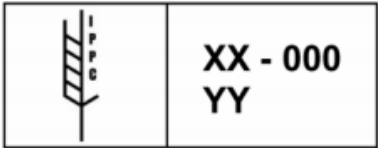
2. 농수산물식품의 검역

- 농수산물식품의 검역은 농산물의 경우 산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 (Veteri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의 경우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 농산물의 경우 상기 검역필요 품목은 반드시 검역을 필해야 하며 식품, 어류의 경우 위생검역증(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3. 화훼류 검역

- Directive 2000/29/EC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 특정 식물에 대해 병충해 방지 및 수입국에서 사전에 검역 및 안전한 식물이라는 내용을 담은 식물위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함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발급함)
- 병충해를 일으키지 않은 안전한 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물위생검역증이 면제되며 그 밖에 소량의 식물, 비판매용, 연구용(실험용), 테스트용 등으로 사용될 목적에도 면제될 수 있음
-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품의 경우는 유럽연합 각 국가에서 이행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함.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출일 14일 전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될 경우 영어 번역 첨부 등임
- 화훼류 또는 목공품 (종이제품 제외) 수입시 포장에 쓰이는 나무 패키징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에서 아래와 같이 규제하고 있음
 - 관련 : Directive 2005/15/EC
 - FAO에서 2002년 제정한 식물위생 표준 법률 ‘ISPM no. 15’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부터 발효됨
 - 제품 겉면을 포장하는 패키징 외에도 물건과 물건 사이를 지지하는 지지대, 받침대, 팔레트 등 모두 해당됨
 - 이러한 EU의 방침은 병충해와 같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무를 재료로 한 목재 박스가 유럽 회원국 도착 후 만일에 있을 해충 및 전염병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배경에 있음
 -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ISPM no. 15’의 절차에 따라 고온에서 소독된, 껍질을 벗겨 만든 나무 또는 ‘ISPM no. 15’ 도장이 패키징에 찍힌 것이어야 함

- 한편 패키징 (나무)상자의 두께가 6mm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며, 나무 상자 전체가 풀이나 합판, 판자(veneer) 등으로 가공된 것은 금지됨

ISPM15 도장	내 용
	- 3가지 코드로 구성됨 (국가, 생산자, 사용 처리된 방법) -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제적인 코드로 사용된 목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되었는지 쉽게 알려줌

3. 검역 인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 EU 규정 1788/2001에 따라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들을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 제3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이 검역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발행기관 및 제품검역기관
 - 생산자,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 출항국, 수량, 제품코드 (tariff number)
- 이 검역인증서를 유럽 연합 지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의 경우 제품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Port health authority(PHA)에 제출함
- PHA는 이 검역인증서를 Defra 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함
- PHA의 승인 사인과 도장은 검역인증서가 정확하고 제품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유기농 제품이 통관하기 전에 필요함
- 또는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PHA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4. 최근 검역 현황

□ EU,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 업데이트

- 2015.09 유럽위원회에서는 EU에 수입된 채소 및 과일류에 대한 2014년 border check 결과 (각 회원국의 세관, 검역소에서 검역, 위생 등의 문제로 수입 불허 또는 보류된 건들 결과 정리)에 대해 발표하며 위생검역 강화 대상 아이템을 추가 또는 해지함
- 약 100,000건들에 해당하는 건들이 검역 대상이었으며 이중 약 11,000건들은 추가의 검사(실험실에서 샘플링 검사 등)가 행해졌음. 2014년은 예년에 비해 수입 채소 및 과일에 대한 검사가 더욱 증가한 해로 기록, 앞으로도 각 회원국의 검역 검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
- 농약 과다 검출, 곰팡이 및 세균 검출 등의 문제가 반복 또는 위험 물질(재료) 포함된 식품의 경우 위생검역 강화 대상으로 지정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 기존의 검역대상 리스트에 있었던 식품 중 해지 및 추가된 품목은 아래와 같음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해지된 품목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추가된 품목 (2015년 9월 기준)
- 포멜로 (중국) : 과거 농약 검출 - 오렌지 (이집트) : 과거 농약 검출 - 고수, 타이바질, 박하잎 (태국) : 과거 농약 검출, 살모넬라 균 - 카레 (인도) : aflatoxins 검출 - 건조국수 (중국) : 과거 알루미늄 검출 - 냉동딸기 (중국) :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바이러스	- 가지, 중국 샐러리 (캄보디아) : 농약 - 포도 (페루) : 농약 - 포도나뭇잎 (터키) : 농약 - 용과 과일 (베트남) : 농약 - 구장나뭇잎(인도, 태국) : 살모넬라 - 참깨 (인도) : 살모넬라 - 효소 (인도) : 클로람페니콜 - 땅콩 (수단) : aflatoxins - 건살구 (터키) : 아황산염(sulphites)

- EU에서는 식품의 농약 잔류치, 식품 첨가물, 세균(해충)에 대한 검역이 엄격히 행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사전에 제품별 요구하는 내용(예: 최대 농약 허용치)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식품에 포함된 아플라톡신(Aflatoxins)에 대한 검역 강화

- 곡물의 곰팡이로 인한 독소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기후에서 발생, 독성이 있고 발암물질은 만들어내는 균임
- 땅콩, 견과류, 옥수수, 쌀, 무화과, 각종 건조식품 및 향신료, 날채소오일, 코코아 등에서 발견되며 그 위험성을 인지하여 호주산 아몬드, 브라질산 땅콩, 수단산 땅콩 등이 현재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어있음
- 견과류 및 씨앗류, 곡류에서 쉽게 퍼지는 아플라톡신에 대해 한국산 식품(곡류, 건조식품 등)의 수출 시에 곰팡이오염 및 농약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1. 수산물

가. 기존 수산물 검역제도

- 수산물의 EU 지역 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인정하는 비(非) EU 국가의 해당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했음
- 이 공식인증서는 수출자격이 있는 국가에 사전 발급되어 EU 국가로의 수출을 승인을 받았음

나. 수산물 어획 증명서

- ‘EC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은 합법적으로 어획이 됐다는 ‘수산물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함

- 유럽 영토 내 도착 예정시간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수입업체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 받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다음의 경우 추가 증명서류 또는 기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수산제품의 EU 수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입하려는 제품이 어획증명서에 언급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어획증명서가 기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 수입업체가 수산제품이 제14(1) 또는 제14(2)조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상에 어획 원산지 선박으로 등재된 어선이 EC IUU 선박 리스트 또는 제30조에서 언급된 IUU 선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협력 국가로서 기국(선적국) 당국이 어획증명서를 검증한 경우
- 수산제품의 정의로부터 예외 되는 제품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민물수산제품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얻은 양식 제품
 - 관상용 어류
 - 활굴
 - 가리비 과의 조개(펙턴, 클라미스, 프라코펙텐 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 포함)를 포함한 살아있거나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냉동된 가리비(Coquilles St Jacques (Pecten maximus) 기타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 홍합
 - 바다에서 어획된 것을 제외한 달팽이
 - 처리 및 보존된 연체동물 (molluscs)
- 유럽연합은 2013년 11월 한국을 불법조업국(IUU)으로 분류하며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었으나 2014년 7월 여전히 EU의 규정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6개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줌

- 2015년 4월 21일 유럽연합은 한국이 더 이상 불법조업국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 한국 정부의 개선안이 국제사회의 법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언급함

2. 임산물 및 화훼류

- 유럽연합에서 '긴급히 주의가 필요한 (위험)종'으로 지정한 것들은 아래와 같음
 - *Anoplophora glabripennis* (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하늘소 일종) : Decision 2015/893/EU, 위험종으로 지정
 - *Diabrotica virgifera* (옥수수근충)
 - *Epitrix* (벼룩의 일종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견)
 - Pinewood nematode (소나무 선충) : 남유럽(포르투갈, 이탈리아, 남프랑스)에서 나타남
- 그 외 유럽연합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럽식품안전청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종으로 소나무 줄기마름병(*Gibberella circinata*), 밤나무 흑벌(*Dryocosmus kuriphilus*)과 포도피어스병균(*Xylella fastidiosa*)이 있음

가. 소나무 줄기마름병 (*Gibberella circinata*)

- Directive 2007/433/EC
-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으로 *Gibberella circinata*는 소나무와 더글라스 전나무(*Douglas fir* trees)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임
- 유럽에서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소나무 줄기마름병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오염된 씨앗, 목재로 만든 제품,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

은 장식용 식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퍼짐

- 이 *Gibberella circinata*에 감염된 나무는 느린 성장과 심각한 가지 손상이 특징임
- 이 해충의 영향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 매우 심각할 수 있음
- 패널은 나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재빨리 유럽의 다른 취약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 이 해충은 천만 헥타르가 넘는 소나무 서식지역과 숲을 황폐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충격은 막대할 수 있음
- 패널에 따르면 씨앗, 식물, 나무, 토양, 해충에 감염된 기계 등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해충이 유럽연합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나. 밤나무 흑별 (*Dryocosmus kuriphilus*)

- Decision 2006/464/EC (이후 2014/690/EU 개정됨)
- 밤나무 흑별은 아시아가 원산지이나 현재는 미국에 있는 밤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밤나무 흑별은 가을에 나무의 싹에 알을 낳고 봄에 유충이 나뭇잎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이를 흑선충이라고 부르며 잎의 성장을 방해함
- 이 해충은 식물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밤의 생산량을 감소시킴
- 밤나무 흑별은 감염된 밤나무를 다른 지역에 식재하면서 확산됨
- 이 해충이 이탈리아 북부인 피드몬트(Piedmont) 지역에 유입되면서 현재는 거의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밤나무 흑별이 발견되고 있으며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헝가리에서도 보고되고 있음
- 패널은 포르투갈 북부, 스페인 북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밤 생산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결론을 지음

- 이 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위험을 감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식품안전청은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다. 포도피어스병균 (*Xylella fastidiosa*)

- Decision 2015/789/EU
- 유럽연합에서는 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위험한 해충이라고 규정, 다양한 질병을 일으켜 농업에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함
-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10월 이탈리아 남부 Apulia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주로 올리브 나무에 영향을 끼침
- 유럽연합에서 Directive 2000/29/EC를 통해 포도피어스병균을 매우 위험한 해충으로 지정하였고 각 회원국에도 본 해충이 유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의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함
- 박테리아는 식물의 목질부에 거주하면서 매미나 작은 곤충들에 의해 전염되며 뿌리에서부터 나무 전체까지 퍼져 결국에는 종을 사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본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특별한 해결책은 현재 없다고 발표함
- 이탈리아 남부 Apulia에서 처음 발견된 포도피어스병균은 이러한 작은 벌레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 자두나무에서도 발견됨
- 현재 유럽연합에서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이탈리아(Brindisi, Taranto 및 그 주변)로 최소 570,000 헥타르의 크기로 예상되며 올리브 나무가 주생산원인 본 지역에 해충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

라. 시사점

- 유럽 식품안전청의 패넬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을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밤나무 흑별의 경우는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유럽으로 소나무 및 전나무, 그리고 밤나무 관련 제품 수출시 해당 해충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검역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제3절 자료출처

- 최근 검역 근황 www.foodmanufacture.co.uk
- 유럽연합 임산물, 화훼류 수입관련 웹사이트
http://ec.europa.eu/food/plant/index_en.htm
-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emergency control' 이 필요한 해충 정리
http://ec.europa.eu/food/plant/plant_health_biosecurity/legislation/emergency_measures/index_en.htm
- 포도피어스병균(Xylella fastidiosa)관련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공식 언론 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5346_en.htm
- 한국의 불법조업국(IUU) 해지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공식 언론 자료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fo/index_en.htm
- 2015년 9월 기준 위생검역리스트 업데이트 정보
http://ec.europa.eu/dgs/health_food-safety/dyna/enews/enews.cfm?al_id=1603

제3장 관세제도

제1절 관세제도 일반

1. 일반사항

- 2011년 6월 한-EU FTA 발효 이후 현재 양측의 3년차 철폐 품목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 되었으며 5년차 철폐 품목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
- 이미 양측의 많은 수출입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발효 5년 차가 시작되는 2016년에는 모든 품목 (양허 제외인 특정 농산물 제외)에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됨

상품 양허 결과

(단위 : 억불, %)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 중	對EU 수입액	비 중	품목수	비 중	對한국 수입액	비 중
즉시 (A)	9,195	81.7%	182	66.7%	9,252	94.0%	318	76.6%
2-3년 (B)	625	5.5%	61	22.2%	282	2.9%	69	16.7%
5년 (C)	718	6.4%	22	8.1%	269	2.7%	28	6.7%
5년내 (A)+(B)+(C)	10,538	93.6%	265	97.0%	9,803	99.6%	415	100%
6-7년	111	1.0%	4	1.4%				
10년	399	3.5%	3	1.1%				
10년 초과	169	1.5%	1	0.5%				
양허제외/현행관세	44	0.4%	0	0.0%	39	0.4%	0	0.0%
총합계	11,261	100%	273	100%	9,842	100%	415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 자료 출처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 (www.fta.go.kr)

- 대EU에 수출하는 한국 공산품 및 임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5년 이내에 철폐
- 한편 2014년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본 협정은 (기존 27개국 외) 크로아티아를 포함 총 28국에 적용 되도록 개정됨

제2절 품목별 관세제도

1. 농산물

- 농산물은 양측에 민감한 아이템임을 고려하여 쌀과 같은 중요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으로 예외적 취급)

* 안전수칙(긴급수입제한조치) :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경제 및 자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은의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관세 인사를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맥아, 감자전분, 인삼, 설탕, 발효주정, 변성전분이 적용됨)

-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즉시 관세 철폐 또는 5년내 완전 철폐로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함

- 즉시 철폐 : 음료(과거 33.6%), 간장(과거 7.7%), 면류, 김 등

Ⅱ 대EU 한국 농산물 수입시 관세 조건 Ⅱ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1,896	91.8%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킷, 음료, 간장, 파스타(속을 채운 것, 기타), 위스키(기타), 식물성액즙(기타), 젤라틴, 김, 기타공예품, 기타음료, 난초 등
3년	10	0.5%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
5년	119	5.8%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앞담배 등
양허제외	39	1.9%	쌀, 쌀 관련 제품 (우리 16개 세 번, EU 39개 세 번에 해당)
합계	2,064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 자료 인용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 (www.fta.go.kr)

- EU는 품목수 기준 98.1%에 대한 관세를 5년대 완전 철폐하며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에 대해 예외적인 양허 제외 또는 시장진입가격제도(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가)를 적용함

2. 수산물

- 한-EU FTA를 통해 수산식품에 대한 관세 협정은 맺었지만 불법조업국(IUU) 감시 및 수산물어획증명서 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한국의 수출여건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됨
- 대 EU에 수입되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 완전 철폐됨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수산물 : 즉시 철폐 또는 3년 내 철폐

Ⅰ 대EU 한국 수산물 수입시 관세 조건 Ⅰ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155	40.8%	냉동새우, 냉동 갑오징어, 냉동황다랑어(조제용), 냉동 가다랑어, 냉동 대구 등
3년	121	31.8%	다랑어, 오징어, 민어, 생선묵, 기타 냉동어류, 조제저장 바지락,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5년	104	27.4%	가자미, 넙치, 기타 수산가공품 등
합계	380	100%	

■ 주요 한국 수산물에 대한 FTA 이후 관세율 변화 ■

HS CODE	품목	FTA 전 관세율	양허조건
16042005	연육 조제품	20	3년
03079913	냉동 기타조개	8	3년
03074938	냉동 오징어	6	3년
03037998	냉동 기타어류	15	3년
03034212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20	0
16059030	저장 또는 저장처리 기타 연체	20	3년
03034311	냉동 가다랑어	22	0
03074911	냉동 갑오징어	8	0
03036090	냉동 대구	12	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 자료 인용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 (www.fta.go.kr)

제3절 자료출처

- 유럽연합 TRADE (한-EU FTA 개요) : <http://ec.europa.eu/trade/>
- 유럽연합 FTA 정책 : <http://ec.europa.eu/trade/policy/>
- 관세율 검색 (EU에 수입시) : <http://madb.europa.eu/madb/euTariffs.htm>
- 자료 :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A quick reading guide' (2010)
- EU의 무역(수출입) 보호 정책 :
<http://ec.europa.eu/trade/policy/accessing-markets/trade-defence/>
- 자료 :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10 key benefits for the European Union' (2011)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 (한국어) : <http://www.fta.go.kr/eu/doc/2/>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 일반사항

□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 유럽연합 식품 라벨링법 Regulation (EU) No 1169/2011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식품 정보에 대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FIC 규정, Food Information on Consumers'라고 알려져 있음
- 이 규정은 기존에 있던 식품 라벨링법을 수정 및 개선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라벨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식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00/13/EC :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 외양, 식품의 광고 등의 내용을 담음
 - 90/496/EEC : 영양정보에 대한 라벨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음
- 위 2개의 법 내용을 포함, 그 외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2014년 12월 13일 개정된 식품 라벨링법 No 1169/2011의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에 대한 정보도 라벨링에 기입해야함

□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적용 일정

- 2011년 12월 12일: Regulation (EU) No 1169/2011 발효
 - 2014년 12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거나 (EC) No 1169/2011 규정의 필수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해당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음

- 2014년 01월 01일: 다진 육류의 특정 필수 표기사항 적용 시작 (부속조항 VI의 B 부분)
- 2014년 12월 13일: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적용
- 2016년 12월 13일: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 적용 시작
 - 2014년 1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3일 사이에는 새로운 영양정보 라벨링 실시는 업체의 자발성에 따름

□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주요 내용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는 반드시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표기될 것 (최소한의 글자 폰트는 지킬 것)
- 알레르기 유발 요소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기입할 것 (레스토랑 등에 납품되는 비포장된 음식에도 해당)
- 기본적인 영양정보는 기입할 것
- 신선 육류(돼지, 양, 염소, 가금류)에 대한 원산지는 반드시 알릴 것
-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정제된 오일 또는 지방에 사용된 채소류의 원산지를 기입할 것
- 다양한 종류의 고기(생선)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formed meat' 또는 'formed fish'라는 문구를 넣을 것
- 해동되어 판매되는 식품은 그 내용을 반드시 알릴 것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1. 의무 표시사항

☐ 의무 기재사항

- 제품명
- 제품성분 리스트
- 알레르기 항원인자
-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 의 함유량
- 제품의 실중량 (net weight)
- 유효기간 (최소한의 기간 또는 사용가능날짜)
- 보관 방법
- 회사명 및 주소
- 원산지
- 사용법
- 알코올 강도
- 영양정보

☐ 주요 변경내용

- 의무 기재사항 중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이중 원산지의 경우 한국 업체들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없는 육류 제품의 원산지 내용만 변경됨

2. 표시방법 유의점

□ 알레르기 항원인자

- 아래 표에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 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 있다면 반드시 제품성분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함
- 또한 보다 명확하게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알레르기 항원인자를 강조할 때는 ‘Contains’ 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인자 성분을 표기해야 함
- 구체적인 표기 방식은 제품성분 리스트 규정에 따름

- | |
|---|
| <p>1.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카뮈트 또는 이들의 합성종 및 제품.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을 기본으로 한 덱스트로스를 포함한 포도당 시럽 - 밀을 기본으로 한 말토덱스트린 - 보리를 기본으로 한 포도당 시럽 -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곡물 |
|---|

2. 갑각류와 해당 제품들

3. 계란과 해당 제품들

- | |
|---|
| <p>4. 어류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타민 또는 카로테노이드를 위한 보인자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 맥주와 와인에 청징제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또는 부레풀 |
|---|

5. 땅콩과 해당 제품들

- | |
|---|
| <p>6. 대두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정제된 대두유와 지방 - 대두에서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혼합된 토코페롤 (E306), D-알파 토코페롤, D-알파 토코페롤 초산염, D-알파 토코페롤 숙신산 - 대두에서 유래한 식물 스테롤과 식물 스테롤 에스테르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 대두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스테롤로 제조된 스타놀 에스테르 |
|---|

- | |
|---|
| <p>7. 우유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유장 - 락티톨 |
|---|

8. 견과류: 아몬드 (<i>Amygdalus communis</i> L.), 헤이즐넛 (<i>Corylus avellana</i>), 호두 (<i>Juglans regia</i>), 캐슈 (<i>Anacardium occidentale</i>), 피칸 너트 (<i>Carya illinoensis</i> (Wangenh.) K. Koch), 브라질넛 (<i>Bertholletia excelsa</i>), 피스타치오 너트 (<i>Pistacia vera</i>), 마카다미아 또는 퀸즐랜드 너트 (<i>Macadamia ternifolia</i>)과 해당 제품들. 단,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9. 샐러리와 해당 제품들
10. 겨자와 해당 제품들
11. 참깨와 해당 제품들
12. 소비할 수 있는 제품상태의 총 SO ₂ 량을 기준으로 아황산과 황화물의 농도가 10mg/kg 또는 10mg/l 인 경우
13. 루핀과 해당 제품들
14. 연체동물과 해당 제품들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II)

□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의 함유량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성분 또는 성분의 카테고리의 함유량을 기재해야 함
 - 제품 이름에 성분 이름이 나타나 있을 때
 - 제품 라벨에 언어, 그림 또는 그래픽으로 성분을 강조했을 때
 - 성분의 이름 또는 생김새 때문에 다른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을 특징화하여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때
 - 단, ‘with sweetener(s)’ 또는 ‘with sugar(s)’라는 문구로 커버할 수 있는 경우, 첨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정보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함유량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가
 - 1) 수분 제외 실중량을 이미 기재했을 때
 - 2) 다른 유럽연합 조항에 따라 라벨링에 이미 함유량이 표기되었을 때

- 3) 향미 목적으로 극소량을 사용했을 때
- 4) 제품의 이름에 이미 나타나 있을 때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별 함유량은 아래와 같이 표기함
 - 제품 사용 시점에서 각 성분의 양에 부합하는 %로 표기
 - 제품 이름의 바로 옆 또는 제품성분 리스트와 이어 표기
 - 제품이 열처리 또는 다른 처리 후에 수분이 손실될 경우, 완제품에 가장 가까운 상태의 성분별 함유량으로 표기
 - 휘발성 성분의 양은 완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표기
 - 농축 또는 건조에 사용된 성분으로 제조 과정에서 재합성된 성분의 양은 농축 또는 건조되기 이전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되는 농축 또는 건조 제품의 경우, 성분의 양은 재구성된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 영양정보

-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영양정보는 아래와 같음
 - 열량
 -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의 양
- 의무 영양정보 외에 보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양정보는 아래와 같음
 - 불포화지방
 - 다불포화지방
 - 폴리올
 - 전분
 - 식이섬유
 - 비타민 또는 미네랄: 상당량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유량에 대한 영양정보 기재시 참고 할 성인기준 1일 비타민 및 미네랄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음

Vitamin A (μg)	800	Chloride (mg)	800
Vitamin D (μg)	5	Calcium (mg)	800
Vitamin E (mg)	12	Phosphorus (mg)	700
Vitamin K (μg)	75	Magnesium (mg)	375
Vitamin C (mg)	80	Iron (mg)	14
Thiamin (mg)	1.1	Zinc (mg)	10
Riboflavin (mg)	1.4	Copper (mg)	1
Niacin (mg)	16	Manganese (mg)	2
Vitamin B6 (mg)	1.4	Fluoride (mg)	3.5
Folic acid (μg)	200	Selenium (μg)	55
Vitamin B12 (μg)	2.5	Chromium (μg)	40
Biotin (μg)	50	Molybdenum (μg)	50
Pantothenic acid (mg)	6	Iodine (μg)	150
Potassium (mg)	2,000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A

- 상당한 양의 비타민 및 미네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음료를 제외한 제품의 100g 또는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음료 제품의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7.5%일 때
 - 패키지가 1회 분량일 경우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비타민 및 미네랄 외에 영양정보 기재시 참고 할 성인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음

열량 또는 영양소	섭취 기준
열 량 (Energy)	8,400kj / 2,000kcal
지방 총량 (Total Fat)	70g
포화 지방 (Saturates)	20g
탄수화물 (Carbohydrate)	260g
설탕 (Sugars)	90g
단백질 (Protein)	50g
소금 (Salt)	6g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B

○ 열량 및 영양소 표시 단위 변환표는 아래와 같음

- carbohydrate	17 kj/g - 4 kcal/g
- polyols	10 kj/g - 2.4 kcal/g
- protein	17 kj/g - 4 kcal/g
- fat	37 kj/g - 9 kcal/g
- salatrims	25 kj/g - 6 kcal/g
- alcohol (ethanol)	29 kj/g - 7 kcal/g
- organic acid	13 kj/g - 3 kcal/g
- fibre	8 kj/g - 2 kcal/g
- erythritol	0 kj/g - 0 kcal/g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V

○ 영양성분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과 표현을 사용하여 표기함

energy	kj/kcal
fat	g
of which	
- saturates,	g
- mono-unsaturates,	g
- polyunsaturates,	g
carbohydrate	g
of which	
- sugars,	g
- polyols,	g
- starch,	g
fibre	g
protein	g
salt	g
vitamins and minerals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V

제3절 라벨링 사례(한국산 사례는 없음)

- 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정보 시스템 RASFF에 따르면 2015년 현재까지 한국산에 대한 라벨링 문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11월 말 기준, 라벨링의 정보 미비, 부정확한 정보 기입 등으로 총 26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1/24	네덜란드	터키	터키산 냉장 훈제 송어에 대해 잘못된 원산지 기입	판매 중지
11/06	스페인	스페인	글루텐 프리제품인 빵부스러기의 일종인 크러스트(crust)에 대해 관련 정보(gluten-free) 미기입	판매중지 및 수거
10/27	이탈리아	중국	중국산 냉동명태에 대해 원산지 미기입	수입불허
9/19	영국	미국	냉동 연어 제품임에도 충분하지 않는 온도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것과 불완전한 제품 정보 (정확한 연어의 종류 미비 'Oncorhynchus nerka and Oncorhynchus keta' 라는 문구가 빠짐)	당국에 통보
8/06	네덜란드	독일	조리된 치킨피레트(filet)에 대해 잘못된 유통기한 기입	당국에 통보
6/30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쿠웨이트산 혼합 향식료에 대해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에 대한 정보 미기입	수입불허
6/26	이탈리아	중국	냉동 오징어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미기입	수입불허
4/27	이탈리아	스페인	스페인산 냉동 참치에 대해 잘못된 냉동일자(freezing date) 기입	반송조치
3/13	폴란드	중국	중국어 폴리아마이드(polyamide) 주걱에 대해 라벨에서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으로 기입	수입보류
3/0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탈리아산 훈제 판체타(햄의 일종)에 라벨링 정보 미비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 제품임에도 이에 관한 정보 미비)	판매중지 및 수거

- 제 3의 국가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내 수출입 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라벨링 문제 사례는 종종 발견되고 있음
- 라벨의 정보 불충분 및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잘못된 정보 기입(예: 유통기한)의 이유가 많았으며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정보를 즉시 서로 공유하여 수입 불허, 판매 금지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제4절 자료출처

- EU 라벨링 규정
 - http://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index_en.htm
 - <http://www.food.gov.uk/foodlabelling/ull/claims/>
 - <http://www.food.gov.uk/news/>
- 새로운 EU 라벨링 규정(1169/2011/EU) 전문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11R1169>
- 영국 식품안전청
 - www.food.gov.uk/foodlabelling/
- 유기농 식품 관련 수입조건, 라벨링 관련 정보
 -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index_en.htm

제5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절 2015년 불합격 사례

1. 2015년 불합격 사례

□ 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경보시스템 발표 기록

- ‘15년 11월 30일까지 유럽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입 거부 및 검역 불합격된 주요 한국산 식품 사례는 아래와 같음

■ 2015년 對 유럽 한국산 통관 거부사례 ■

- 총 12건 (농식품 · 농산가공 : 7건, 수산식품 5건)
 □ 라벨 및 포장 불합격(0건), 기준치 초과(9건), 식품변질(1건), 서류미비(2건)

날 짜	검역국	식품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월	핀란드	단무지	검증되지 않은 식용색소(E102) 검출	수입불허
	이탈리아	신선버섯류	한국산 새송이 버섯에서 중금속(sulphite: 112.64mg/kg-ppm) 검출	담당기관에 통지
3월	포르투갈	인삼음료	EU에서 승인받지 않은(novel food) 재료 (삼지구엽초- Epimedium)포함	수입불허
5월	스페인	냉동조개류	잘못된 온도 조절(-8.2, -12 ‘C)로 제품의 부패와 위생상태 불량	수입불허
7월	이탈리아	녹차	한국산 녹차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endosulfan: 0.14 mg/kg-ppm’ buprofezin: 0.60mg/kg-ppm)	수입불허
9월	유럽	훈제 참치	규정위반 물질 - 벤조피렌 검출	폐기
	프랑스	냉동황새치	한국산 냉동황새치에서 수은(1.19mg/kg) 검출	수입불허
10월 10월	영국	음료	EU에서 승인받지 않은(novel food) 재료 (헛개나무)가 포함	수입불허

날 짜	검역국	식품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1월	네덜란드	냉동조개류	수산물 수입을 위한 어획증명서 불분명, 부정확	수입불허
	네덜란드 외	신선버섯류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균(식중독 원인균의 일종) 검출	제품 수거, 담당기관에 통지
	네덜란드	냉동조개류	수산물 수입을 위한 어획증명서 불분명, 부정확	수입불허
	네덜란드 외	신선버섯류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균(식중독 원인균의 일종) 검출	제품 수거, 담당기관에 통지

*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정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2. 시사점

□ 농약, 중금속 관련

- 중금속, 농약 등의 검출로 세관에서 수입 불가의 사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허용치 및 (비)승인 리스트에 대해 사전 확인 필요
- 유럽연합에서는 첨가물질별 최대허용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분 류	내 용	검색하기
농약	제품별 농약 허용치, (비)승인 농약 리스트 등	http://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public/?event=homepage&language=EN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종류 및 허용치, (비)승인 리스트 등	http://ec.europa.eu/food/safety/food_improvement_agents/additives/database/index_en.htm
식품향료 (flavourings)	(비)승인 리스트	https://webgate.ec.europa.eu/sanco_foods/main/?sector=FFL&auth=SANCAS
중금속	EU 지정 중금속 리스트, 허용치 검색 등	http://ec.europa.eu/food/safety/chemical_safety/contaminants/catalogue/index_en.htm

□ 콜드체인의 파열, 컨테이너 온도조절

- 냉장 및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잘못된 온도조절로 콜드체인이 파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콜드체인의 파열은 제품의 부패와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유럽연합에서는 식품의 위생과 보관온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함. 따라서 냉장 및 냉동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온도조절 및 콜드체인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

- 유럽연합에서는 유전자 변형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식품 원료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함

□ 유전자 변형 쌀

- 유전자 변형 쌀을 이용하여 만든 쌀과자, 국수, 라면, 떡 등은 모두 유럽연합에서 허가하지 않음. 중국에서 수입한 쌀로 가공품을 만들 경우, 수입된 쌀이 유전자 변형 여부를 미리 확인 하여 원재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검역 증명서 준비 철저

- 수입증명서 (CED), 검역 증명서 등 해당 식품 수입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수산물 수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산물 어획 증명서'의 미비 또는 자료 불충분의 이유로 수입거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관련기관과 상의하여 증명서 발급 절차를 미리 밝는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신기식품 (Novel food)

- 유럽연합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 식품 자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 'Novel food' 라고 분류하여 관리함
- 1997년 관련 법률(EC No 258/97)이 만들어진 이후 2015년 초 기준 약 180여개의 신청서를 받았고 이중 80여개만이 정식으로 승인되어 수입이 가능함
- 한국의 다양한 건강식품(예: 인삼, 헛개나무 등)이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된 Novel food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리스트에 없다면 현지 수입자와 협력하여 각 회원국의 지정된 기관에 문의하여 승인 절차는 받는 것이 필요
- 승인된 '신기 식품' 검색하기 :
http://ec.europa.eu/food/safety/novel_food/catalogue/search/public/index.cfm

□ 관련 서류

- 유럽연합이 식품 수입 시 요구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함. 또한 문서에 유효 기간이 있을 경우, 컨테이너 도착날짜보다 문서 유효기간이 더 길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제품 개별 패키지의 제품명/제품코드와 서류에 기재된 제품명/제품코드가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법 (살균법)

- 국내에서는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의 목적으로 식품에 저장된 선량 이하의 방사선으로 1회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방사선조사 식품은 “조사처리”(treated with radiation, treated by irradiation)라고 문구로 표시하거나 마크를 직경 5c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제6장 수출현안

제1절 수출현안

□ 유럽연합 통관 시스템 현대화

- 2015년 7월 28일 집행위는 유럽연합의 통관시스템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통합 및 현대화하는 법안을 채택함
- 해당 법안은 법적 확실성 및 일관성 보장, 통관정책의 투명성 제고, 효율적인 관세정책 보장 및 전 통관 절차의 전산화를 위한 것이며 2013년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를 기반으로 세부조항이 추가됨
 - 통관 정책의 간편화
 - 정보 수집 : 각 회원국의 행정시스템을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정보가 수집 및 통계가 가능하도록 함(공동 데이터)
 - 비합적인 절차, 테러, 수입금지 제품들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함
- 본 법안은 위임법령(delegated act)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그 후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관세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관련 절차의 세부 실행법안 채택 후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식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연구 지속

- 식품에 포함된 중금속의 종류로는 크롬, 비소, 우라늄, 카드뮴, 납, 니켈, 수은 등이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EC 1881/2006를 통해 식품에 허용가능한 각 품목별 최대 허용치를 지정, 현재까지 유럽식품안전청과 중금속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2015년 최근 발표된 것으로는 니켈과 수은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니켈은 현재까지 (식품에 대한) 최대 허용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물(식수)에도 포함되어있는 니켈은 리터당 2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됨
- 2015년 2월 니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유럽식품안전청은 이상적인 1일 니켈 섭취량은 ‘체중의 2.8 마이크로그램’ 이라고 언급함
- 수산식품에 포함이 많이 되어있는 수은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은 올해 1월 ‘수산식품을 섭취할 때의 이점과 위험 요소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특히 생선류에 함유된 메탈수은(methylmercury)의 위험성을 경고함
- 높은 수은의 함유량을 보이는 참치, 황새치, 강꼬치고기(pike), 대구와 같은 생선의 섭취를 조절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각 회원국에게 다양한 인구별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생선의 섭취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 한편 유럽연합은 토지 및 지하수 등의 자연상태에 존재하며 동·식물 및 인체에 축적되는 비소의 위험성에 대해 2016년부터 비소 함량 감시는 강화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함
- 과도한 비소 축적은 피부질환, 고혈압, 당뇨, 생식계질환,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
- 감시대상은 특히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예: 곡류, 과일 및 야채주스, 생수를 포함한 식수, 커피, 건조 잎차, 맥주, 생선 및 해산물, 야채, 해조류, 우유 및 유제품, 유아용 음식, 의료용 식품 및 식품보조제)와 다양한 식품들을 지목
-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금속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중금속 최대 허용치 초과로 수입불허 또는 경고 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규정을 위한 조사

-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튀김, 감자칩, 커피, 케이크류, 빵, 비스킷 외 미식품인 담배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120℃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였을 때 발생함
- 현재 EU에서는 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의 허용치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 산하 유럽식품안전국에서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아크릴아마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발표, 회원국과 공유함
- DNA 억제,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럽 식품안전국에서는 규제가 필요한 물질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사항은 유럽 위원회 및 각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을 마련함
- 2016년 이후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 또는 지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함

□ 주요 품목별 통관, 검역 변동 사항

품 목	변경 사항
가쓰오부시	• 다환성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함유량 기준 변경 (기존 5μg/kg → 30.0μg/kg) • 어류건조가공 기술발전으로 PAHs의 잔류량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함유량을 낮췄으나 일본의 이의(함유량 변경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연구결과 제출)로 30.0μg/kg으로 변경됨
고추류	• 고추류 향신료(Capsicum spp. spices)의 오크라톡신(Ochratoxin A) 함유량 규정(EC No. 1881/2006) 내용 수정 - 생강, 울금(Curcuma longa) : 15μg/kg - 통고추, 간고추, 고춧가루 등을 포함한 고추류(Capsicum spp.) : 20μg/kg - 기준이 다른 향신료가 혼합된 경우 : 15μg/kg -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유통된 상품은 유통기간까지 당시기준(30μg/kg) 적용됨
건강보조식품	• 다환성방향족탄화수소(PAHs : 20여종이 넘는 화학물질을 칭하며 벤조피렌을 포함, 여러 가지 PAH 물질들이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의 최대잔류 허용치 설정

품 목	변경 사항
	• 벤조피렌 외 4가지의 PAH 물질(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의 함에 대한 허용치도 추가 - 식품의 원료 목적으로 생산된 코코아 섬유질 : 3.0μg/kg / 15.0μg/kg - 바나나 칩 : 2.0μg/kg / 20.0μg/kg - 식물성성분을 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스피룰리나를 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 10.0μg/kg / 50.0μg/kg - 건조허브 : 10.0μg/kg / 50.0μg/kg - 카르다몬, 훈제고추를 제외한 건조 향신료 : 10.0μg/kg / 50.0μg/kg
감미료 에리스리톨 (Erythritol, E968)	•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를 줄이는데 쓰이는 감미료인 에리스리톨은 오직 저칼로리 또는 설탕무첨가 음료의 감미료 용도로 1.6%의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 이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검사를 통해 무알콜 음료에서 1.6% 미만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견을 권고받아 결정된 것임

제2절 자료출처

- Commission modernised EU customs procedures :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2015/07/28)
- 감미료 에리스리톨((Erythritol, E968) 관련 :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EU 2015/1832 (2015/10/13)
- 중금속 (Metals as contaminants in food) :
<http://www.efsa.europa.eu/en/topics/topic/metals>
- 아플라톡신(Alatoxins) in Food :
<http://www.efsa.europa.eu/en/topics/topic/aflatoxins>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
<http://www.efsa.europa.eu/en/topics/topic/acrylamide>
- aT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 (주요국 모니터링) :
<http://kati.net/saf/safCus7.do?menuCode=895&bbsid=1>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러시아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6장 수출현안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 러시아 수입관리체계는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됨
 - 관세조치 : 수입관세를 통하여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 및 국가재정 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임
 - 비관세조치 :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
- ☐ 세관총서 : 러시아 연방세관(Federal Customs Service;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ТС России)
 - 러시아 세관기구는 재무부의 관세국으로 1865년에 설립되었으며 1917년부터 무역 및 산업 인민위원회(МКТР)의 한 부분으로 소비에트 세관서비스가 운영
 - 1991년에 소비에트 세관서비스는 경제개발부의 국가세관위원회(GTK)로 대체 되었으며 2006년 GTK는 연방세관으로 변경됨
 - 러시아 연방세관은 러시아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러시아 통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 직속세관
 -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8개의 지방세관 아래 77개 관할세관이 있고, 481개의 분소가 있으며,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1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47개의 세관 분소가 있음

-
- 중앙 세관(CTU) ots-geg@mtu.customs.ru
 - 시베리아 세관(STU) stu-kl@stu.zsttk.ru
 - 북서 세관(SZTU) kontakt_sztu@mail.customs.ru
 - 칼리닌그라드 세관 ovs@customs.kaliningrad.org
 - 남부 세관(JTU) jtu_kontakt@mail.customs.ru
 - 볼가 세관(PTU) ptu_odo@ptu.customs.ru
 - 우랄 세관(UTU) UTU-KS-MTS@ural.customs.ru
 - 극동 세관(DVTU) dvtu@dvtu.vladivostok.ru
 - 북 코카서스 세관(SKTU) ssbsktu@mail.ru
-

나. 법률체계

☐ 법률명 :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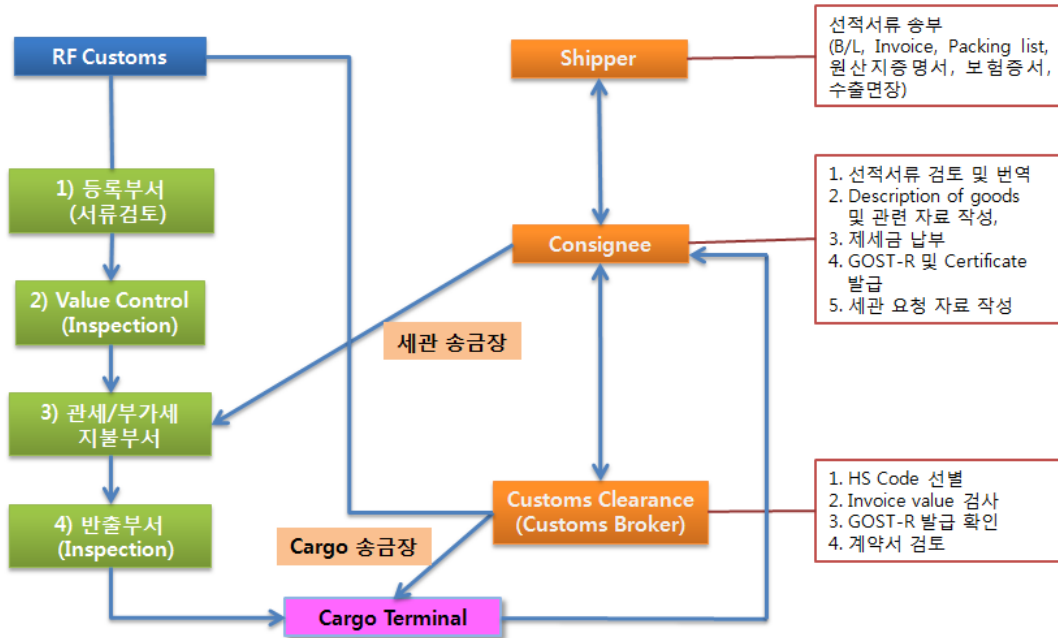
- 3국 관세동맹 발족에 따라 러시아의 통관/관세법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이 제정되어 2010.12.29일부터 시행 됨.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2015.10.19일부터 개정본 발효 시행

☐ 규정사항

- 러시아로 물건을 수입 또는 러시아에서 물품을 수출, 러시아 연방 국경을 통과 하여 물건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일반원칙
- 상품을 신고 및 기타 통관 절차를 적용하기위한 절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고 관세동맹의 대외무역상품분류(TN VED CU)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기위한 규칙
- 관세 적용을 위한 기준
- 세관검사에 대한 절차(위험 관리 시스템, 세관 검사 및 검색, 세관 감사 등)
-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제품의 출시에 대한 중단 절차
- 관세 적용에 대한 지불, 회복, 강제 추가부담금 절차
- 세관 당국에 대한 결정, 조치 또는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 등

2. 통관수속

가. 통관수속 개요



나. 수입허가

☐ 모든 수입허가는 경제개발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이 통제 및 관리하고 있음

○ 단, 이에 대한 예외로 운동용 무기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장하며, 암호해독 데이터 수입은 일반허가 외에 연방통신국(Federal Agency of Government Communications)의 승인이 필요함

※ 수입허가 품목 : 무기류, 무기제조용 원료, 군사목적의 기술, 폭발물, 핵·방사능 관련 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원당 및 설탕, 컬러TV 등

☐ 수입허가를 규율하는 법규는 ‘러시아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 1299호(1996. 11. 3)’임

□ 수입허가는 1회용 허가과 일반허가 등 2가지 종류가 있음

- 일반허가는 1년 기간 이내에 단일계약에 의한 수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임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령 제854호(1992. 11. 6)’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보석류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의 보석류 수출입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제973호’(2001. 6. 21)가 규정하고 있음

□ 수입통관절차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전 서류준비	① 세관신고서,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필수 준비 -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C/O) 등을 품목별로 추가 제출 ② 관세납부 전 사전 예치 요건 충족 - 수입물품 운송수단, 해당금액 예치 등 ③ 관할 세관 수하인 업체 등록 및 등록 번호 취득 ④ 수입규제품목 관련 라이선스 취득/품질 인증마크 부착/품목별 인증서 획득 등의 수입 요건 충족
▽	
수입신고	① 수입신고서는 서류 및 디스켓 제출 - EDI신고는 현재 도입 단계임 ② 수입물품 신고가격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③ 지정품목은 러시아 연방 FEACC코드(관세코드)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 - 해당 품목: 육류, 포도주, 알범, 직물, 컴프레서,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자판기, 손목시계, 악기 등
▽	
심사 · 검사	① 물품 검사 후 화물 검사서 작성 ② 보세운송시, 국경검사대 송부 내용/보세운송면장과 수입신고서 내용 비교 ③ 계약서 내용 및 화물 반입 서류를 비교 검사
▽	

관세납부	① 평균 수입관세 13%, CIF가격 기준 종가세 부과 - 원재료 5% < 부자재 10% < 제품 10~20% ② 일부 상품은 종량세 및 수량세, 종가·종량혼합세 적용 ③ 관세 외 부가가치세(최고 18%), 소비세 부과
신고수리 물품반출	① 모든 관련 서류 사본을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Federal Customs Committee)에 송부 - 연방관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관 결정→물품반출

□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신고전 서류준비	★ 러시아어 통관서류 준비 등 ① HS코드가 영문으로 공개 되지 않아 확인·적용이 어려움 ② 영문서류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 - 제품 설명서 및 라벨링도 러시아어 기재 ③ 서류상의 경미한 실수도 해당 세관의 자의적 해석과 규제 가능 - 통관서류 작성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④ 품질인증에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수입자와 충분히 협의 필요
수입신고	★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에 주의 ① 통관 절차상 일선 세관장 및 담당자의 재량권이 상당함 - 통관 항구마다 세관 집행 방식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불합리한 HS코드·관세율 적용 방지를 위해 신뢰도가 높은 통관사 선정 필요 ② 물품단가를 저가신고(Under Value) 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적발 시 압류조치, 매우 심각한 행정/형사 처벌을 받음 ③ 최저 준거가격제도 시행 중 - 세관신고 가격이 최저 준거가격에 미달될 경우 준거가격에 상응하는 관세/부가세 납부 후 행정심판을 통해 환급 받음 * 러시아 중앙세관의 최저 준거가격(reference price) 적용
심사 검사	★ 상대적으로 높은 화물검사 비율에 대비 ① 화물검사는 Random 방식의 표본 추출 검사 원칙을 적용 - 다양한 검사방식 및 까다로운 검사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 ② 수입이 증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수검사 실시, 평균 화물의 44% 검사로 화물검사 비율이 높은 편임 * 화물검사 속도가 늦고 검사 시 제품파손 및 분실 우려

관세납부	① 관세 및 부가세는 납부예치 계좌 충전 금액으로 납부 가능 ② 관세 외 사치품을 중심으로 10~400%의 소비세가 부과됨 - 해당 품목: 에틸알코올, 주정용액, 알코올 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8개 품목 중심
▽	
신고수리 물품반출	★ 관세위원회의 최종 서류 심사로 인해 추가 통관 시일 소요 ① 서류나 물품에 결함이 없을 시에도 통관의 지연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가능 ② 보관료가 비싼 편으로 통관 지연 시 부대비용이 상당함

□ 수입신고절차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다. 세관수입자 등록서류 및 통관 접수서류

☐ 세관수입자 등록서류 목록

No.	등록서류
A-1	정관, 변경/개정정보함(공증본)
A-2	입헌동의서(공증)
A-3	사업자등록증명서(세무서 발행 납세자등록증, 공증본)
A-4	RosStat 발행증명서(국가통계위원회증명서)
A-5	지불계좌 개설한은행의 Reference(러시아 classifier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에 등록된 은행코드, 발행 후 1달 이내의 문서)
A-6	외환계좌를 개설한은행의 Reference(1달 이내 발행된 문서)
A-7	세무국등록증명서(세금납부번호, 산업기업체분류, 공증본)
A-8	러시아연방 법인등기부등재증명서(공증본)
A-9	회사 대차대조표(최근분기, 세무국의허가승인본)
A-10	최고경영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A-11	회계담당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A-12	최고경영자 여권사본(공증본)
A-13	회계담당자 여권사본(공증본)
A-14	회사의 법적 등록 주소에 대한 차용계약서
A-15	통관브로커 위임장
A-16	법인장이 외국인인 경우 노동허가증

※ 세관 수입자 등록은 해당세관에 처음 통관 접수시 필요하며 통관서류와 동시 접수

☐ 통관 접수서류 목록

구분	No.	통관접수서류	언어
필수 접수 서류 항목	B-1	계약서, 부속협약서	러시아어/영어
	B-2	운송장(B/L, CMR, AWB)	러시아어/영어
	B-3	Invoice	
	B-4	Packing list(Detailed Packing list)	러시아어/영어
	B-5	제품설명서(사용목적, 기능, 동작원리, 사용절차, 구성품, 규격, 사진, 도면, 시험성적서 등)	러시아어
	B-6	원산지 증명서	러시아어/영어
	B-7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	러시아어/영어
	B-8	수출신고서(수출신고서의 경우 선적사의 자국어 사용)	러시아어/ 선적사 자국어

구분	No.	통관접수서류	언어
기타 접수 서류	B-9	Certificate(HS코드에 따른 관련 Certificate발행) ⇒ GOST-R, Declaration, Refusal Letter, Fire certificate 등	러시아어
	B-10	외환거래확인서(PassportSGELKI)	러시아어
	B-11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은행확인서	러시아어
	C-1	제작사 상표(Trade Mark) 사용허가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2	매뉴얼 및 CD/DVD 저작권(License)이전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3	정품수입 확인서(일부제한품목)-현지해당법인에서 수령	러시아어
	C-4	MSDS(화학제품) 및 시험성적서(글루, 가향제)	러시아어
	C-5	식물검역증	러시아어/영어
	C-6	Technical Passport (전력변환기 통관시)	러시아어/영어

☐ 일반통관시 필요서류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필수 여부	사본/원본	표기 언어
수출자	1	C/I (Commercial Invoice)	수출자		사본	영어
	2	P/L (Packing List)	수출자		사본	영어
	3	제품 설명서 각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한 자세한 기술 자료 준비 필요 (HS CODE 및 Certificate 발급 여부 결정)	수출자		원본(사본)	러시아
	4	Price List 선적지 상공회의소(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기관) 인증 가격 리스트	수출자	세관 요구 시	사본	영어
	5	수출신고필증 수출업자가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는 서류	수출자/관세사	세관 요구 시	사본	영어
관세사	6	통관 신고서 (GTD)	관세사		원본	러시아어
	7	DTS(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율 산출 근거, GTD Attached 서류	관세사		원본	러시아어
	8	Master B/L(Manifest) or Railway Bill 하역 후 선사의 agent로부터 전달받는 선사의 stamp가 찍혀 있는 MBL 원본 (Moscow 통관 시는 Railway Bill 원본 제출)	선사		원본	-
수입자	9	Bank Slip 세관과 연결된 은행계좌로 송금된 통관 자금 송금 증명서. 통관과 함께 통관 금액이 차감됨.	은행		원본	러시아어
	10	Certificate for Commodity (GOST) 제품 품질 증명서. 증명서 발급 브로커 회사를 통해 발급 받아 수입 시마다 제출함.	증명서 발급 브로커		사본공증본	러시아어
	11	외환거래허가증 (20,000불 이상 송금 시 발급 필요)	은행		사본	러시아어
	12	Contract (수출자/수입자 간의 계약서)	-		사본	영어/러시아어
	13	위임장 (통관 업무를 위임 한다는 증명서)	-		사본	러시아어

※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및 Calculation of Transportation Cost 서류 세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음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특정 아이템 수출 시 (ex. Lamp) 에 세관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 요구

☐ 보세통관시 필요서류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필수 여부	사본/원본	표기 언어
수출자	1	C/I (Commercial Invoice)	수출자	필수	사본	영어
	2	P/L (Packing List)	수출자	필수	사본	영어
운송사	3	Railway Bill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4	보세운송신고서 (VTT)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5	Master B/L (Manifest)	선사	필수	원본	-

※ 보세통관이라 할지라도 Inspection 및 서류 검사, HS Code 기재 등을 세심하게 검사할
철도 위는 하나의 일종의 보세 자치 구역이라 할 수 있음

3. 화물의 운송

가. 극동 러시아 및 중부 러시아 화물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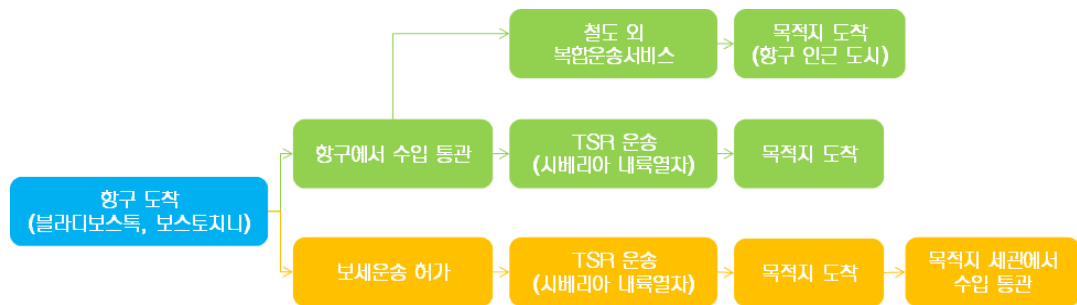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보스토치니항과 블라디보스톡항까지 해상운송되어 내륙으로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을 통해 운송되거나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운송됨

☐ 화물의 통관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수화주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철도에 환적하기 전에 수화주 혹은 수화주 대리인이 직접 수입통관 → 러시아 내국화물 자격으로 TSR로 운송
- 보세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보세운송 허가를 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TSR로 운송 → 목적지의 세관에서 통관절차 진행
- 복합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국내 운송업자들이 현지 협력자들과 제휴해서 제공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내륙운송(하바롭스크 지역 등 항구 인근 지역으로의 운송에 주로 이용)

☐ 통관 시점에 따라 철도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가 달라짐

- 수입통관을 거친 화물은 부가가치세 18%가 면제되나 보세운송되어 목적지에서 통관이 예정되어있는 화물은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철도운송료가 결정됨



나.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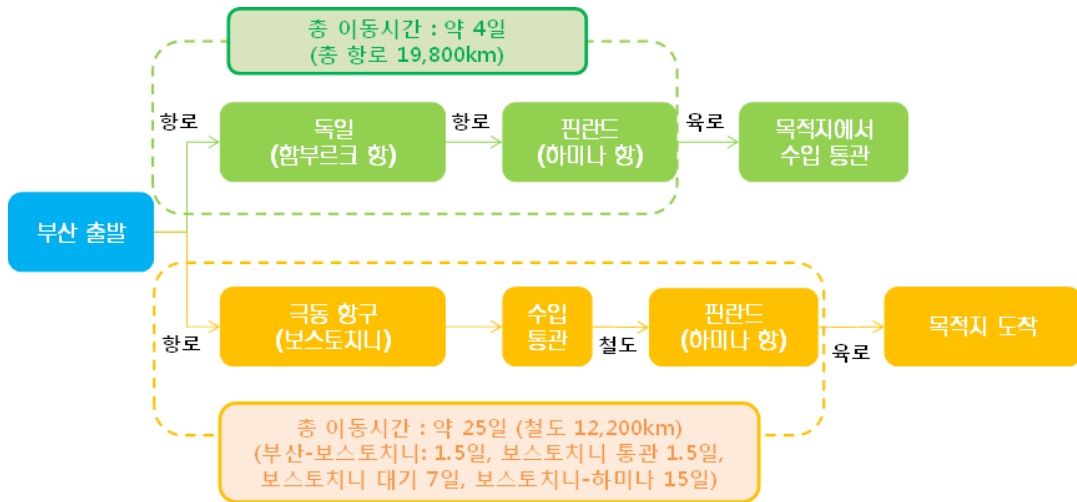
☐ 모스크바를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운송경로이며 핀란드 하미나항을 경유함

☐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은 2가지 경로가 있음

- 함부르크항 경유 : 독일 함부르크항 도착 → 선박으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 보스토치니항 경유 : 보스토치니항 도착 → 기차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 극동 러시아 화물 운송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기간이 길고 제3국 경유 등 복잡함

- 독일과 핀란드를 거치는 항로 운송의 경우, 목적지인 모스크바 세관(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러시아 지역 세관)까지 별도 대기나 지체 없이 운송된 후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짐
-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까지만 항로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지까지의 운송수단이 TSR과 트럭이기 때문에 전체 운송기간이 매우 길고 제3국을 다시 경유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다. 항공화물운송

☐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세르메체보 2 공항으로 직송

○ 항공이동 소요기간은 1일, 통관은 3~7일

☐ 주로 중량이나 부피가 적은 화물에 적합하며 정상통관을 하는 화물임

4. 통관관련 비용

☐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적용되며, 통관수속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로는 통관비, 세관원 동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음

5. 비관세조치

가. 표준 및 인증

- ☐ 통관 시 수입품에는 지방 국세청이 발급한 안전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식품류의 라벨이나 포장지에는 러시아어로 제품명, 생산자, 중량, 성분, 유효일자, 기타 정보 등이 표기되어야 함
 - 비식품류에는 라벨이나 설명서 등에 제품명, 제조자,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야 함
-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정 및 품질 인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제품은 국세청의 인가를 받은 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함
 - 표준 및 인증제도를 규율하는 연방기술규제법(제184-FZ호, 2002.12.27)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줄였으며, 처음으로 자율검사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도입하였음
 - 강제인증제도의 성격인 국가표준규격(GOST)을 도입
 - 특정상품의 수입 시 표준규격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요구
 - 일부 대상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신청품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는 자체 조직을 통해 동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임 기관을 통해서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국주재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있으며, 기타 인증 대행기관으로는 Sercons Korea, CTR Far East, GSI(범세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있음

- 해당항목이 이미 유럽의 인증(CE)등을 통과 했을시, GOST인증이 면제될 수 있음
- 약 2주정도의 인증시간 필요

나. 정부구매의 국산품 우대

- 공식적으로 정부구매 시 국산품에 부여하는 특혜는 거의 없으나, 정부구매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는 많이 있음
- 러시아정부는 정부조달 입찰에 최종 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 러시아 법령(N94-FZ)이 정한 품목 군에 속한 제품일 경우, 최종 낙찰 가격 보다 15%를 싸게 공급하도록 하는 법령을 2011년에 시행함
- 2012년 3월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동 법령을 2013년에도 연장하고 WTO가입 이후 대폭 관세율이 낮아질 돼지고기(신선, 냉장, 냉동), 설탕(사탕무 및 사탕수수 원료), 농기계장비, 종이류를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라 발표함

다. 사전예치조건

러시아 통관법은 수입물품 및 운송수단의 예치, 제3자 보증, 해당금액의 예치 등을 통해 관세납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외환통제

- ☐ 수입거래는 러시아 외환법규의 규제를 받으며, 주된 법률은 외환법 제3615-1호(1992.10.9 제정, 2004.6.17 개정)와 ‘거주자에 의한 수입품 지급조정 통제에 관한 중앙은행 및 국세청 합동명령제91-1/01-11/28644호(2000.10.4.)임
- ☐ 수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거래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동 서류는 상세한 수입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통관 시 수입자는 동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마. 국내대행자

통관법 172조에 따라 러시아 조직만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계약의 러시아측 당사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 보세창고에 맡기던지 러시아 국적의 통관대행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행료가 상당히 비싼 편임

6. 변동사항 및 이슈

가. 관세행정 개선

-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고자, 세관신고 검사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품에 대한 사전 세관 신고 후 나중에 해당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함
 -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각국 세관 임원회의를 통해 2012년 6월 17일부터 관세동맹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의무적인 사전통지’를 도입함
 - 해당조치는 통관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지향하며 대외경제활동을 원활하게 구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함임
- 2012년 5월 러시아 전략기획청은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함
 - 목표: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개선
 - 2012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에 시범을 거쳐 2014-2018년까지 정착
 - 구체적인 방안: 통관서류 축소 및 소요기간, 비용 단축
 - 통관 서류 축소: 수입 통관 절차 시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 4개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할 계획
 - 통관 소요기간 단축: 수입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단축할 계획

- 통관 비용 절감: 수입 통관 시 소요되는 비용을 2012년 1,800달러(1콘테이너 평균)에서 2015년 1,300백달러, 2018년 1,000달러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1,850달러에서 2015년 1,200달러, 2018년 900달러로 절감 계획
- 기타: 통관 간소화 적용대상 기업(기관) 확대, 세관원 복지 개선, 세관 규정 위반 행정 처벌 정비

나. 보호무역 조치강화

- ☐ 러시아는 G20 정상회담에서의 보호무역 Standstill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수입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음
 - EU 집행위의 G20 국가 무역제한조치 모니터링 제5차 보고서('11.6)에 의하면 러시아는 경제위기 이후 1년('08.10~'09.10월)간 G20 국가 중 가장 많은 보호 무역 조치(48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 관세인상 등 국경 무역장벽 35건, 기술·조달 장벽 4건, 투자장벽 1건, 수출촉진 1건 등 총 48건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 ※ 러 무역제한조치 상세내용은 http://ec.europa.eu/trade/index_en.htm 참조
- ☐ 러시아 정부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대외 무역구제제도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WTO 가입을 전후로 하여, 철강, 농기계, 섬유, 상용차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및 세이프가드 조사를 강화함. 2012년도 하반기에만 반덤핑 판정 3건, 반덤핑 조사 2건, 세이프가드 조사 4건에 착수함
 - 2013년 세이프가드 7건 등 총 8건에서 2014년도에는 4건으로 감소함. 2014년도 상용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1건이 2015년까지 진행되고 있음
- ☐ 우크라이나와 EU의 연합 협정 개시 후 10일 이내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유럽수준까지 인상 예정
 - 2014년 9월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반입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관세율을 도입하기

로 결정함. 독립국가연합국의 자유무역지대 참가국인 우크라이나는 기존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EU와 연합 협정을 체결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행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정

○ 관세율 인상 품목 :

- 육류, 유제품, 제과제품, 과실류, 곡물, 맥주, 포도주, 정류, 담배, 경차, 버스, 냉장고, 의복, 신발, 금속제품,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플라스틱, 미네랄 비료
- 여객 및 화물 선박, 기계, 화장품, 식물, 가구, 스포츠장비 등 174개 품목

○ EU산 상품이 무관세로 우크라이나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러시아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10일이 카운트 다운되기 시작되며, 이후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유럽산과 동일하게 도입할 계획임

다. 2012년 8월 22일, WTO 156번째 회원국 지위 발효

- ☐ '93년 GATT시절 가입을 신청한 이후 '98년부터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자국 내 에너지 가격 협상 문제와 美, EU와의 이견, '08년 그루지야와의 정치적 분쟁 등으로 회원 가입에 난항을 겪어왔음
- ☐ '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약20년 만에 러시아의 WTO가입이 최종 승인됨
- ☐ G20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가입국이던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국제정치적 위상 제고 및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 WTO 이후 러시아 수입통관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여 교역·투자에 있어 새로운 환경 조성 가능

라. 화물운송 지연발생 사유

- ☐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화물은 대부분 극동지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데 겨울철에는 혹한으로 인해 터미널에서 수하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안전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기도 함
- ☐ 이로 인해 평소에 비해 2~3배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운송시기를 잘 선정해야함

제2절 통관제도 특징

1.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제도

- ☐ 러시아의 통관제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억제하며 정부 재정확보를 위해 수입관세제도, 규격인증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국상품의 통관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사회주의적 관습, 전산시스템의 미구축, 일률적이지 못한 통관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세계공용 통관관습 불인정, 높은 보세창고료 등으로 특수한 통관여건을 지니고 있음
-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보낼 경우 UPS, DHL, TNT 등을 이용하더라도 세관사무소에서 내용물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

2. 높은 통관비용

- ☐ 러시아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1%이며 부가가치세는 18%이나 그 외 특수품목세, 각종 수수료, 인증서 및 증명서 취득비용, 법인세 등 수출가격 외에 현지 판매가

격에 미치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함

- 또한, 통관 진행 중에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기간의 고의적 지연, 관료의 횡포 등으로 뇌물을 주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는다 고 법제화되어있지만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불법적인 통관 발생

- 이러한 복잡한 통관구조와 높은 통관비용으로 회색통관, 간이통관, 블랙통관 등으로 일컫는 이중통관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뤄짐. 회색 통관으로 진행되었더라도, 추후 러시아 조세 당국에 의해 판매 물품에 대한 적법 수입 여부 등이 재차 점검되고 있고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전후로 단속이 강화됨

□ 통관절차상 유의사항

- 수입 신고는 수입자와 관세사가 할 수 있음
 - 통관 관할지 세관에 수입업체 등록
 - HS코드는 영문 공개가 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움
 - 각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한 기술자료 준비
 -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영문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품설명서, 라벨링 모두 러시아어 기재
 - 인보이스 상 Under value는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
- 라벨링 내역, 인증서 내역, 인보이스 상 명시된 물품 내역, 계약서 상 물품 내역 등은 모두 다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함
 - 실제 통관 제품과 서류 내역이 불일치하여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빈번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 수입 검사기관

- ☐ 러시아연방 보건부(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 기관인 보건사회개발감독국(Roszdrazhnadzor)에서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하고 의약품 등록 담당
 - 위생관리 및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
- ☐ 소비자권익보호 및 복지 감독국(Federal Service for Surveillanc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Rospotrebnadzor)
 - 2004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2012년까지 러시아연방 보건부 산하 기관이었다가 2012년 5월부터 러시아연방정부 직속기관에 포함
 - 러시아연방 보건부의 위생관리 업무는 Rospotrebnadzor로 이관되어 위생증명서 발행, 관세동맹의 위생 감독, 제품 국가등록, CU국가등록 등의 업무 총괄
- ☐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STANDART)
 -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산하 집행기관으로 수입 및 국내 제조 제품의 제품인증서 표준 관리
 - 2004년 국가표준위원회(State Standards Committee; GOSSTANDART)가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Rostekhnregulirovaniye)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2010년부터 약칭은 ROSSTANDART로 변경

□ 러시아연방 농업부(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 소속으로 육류, 가금류, 곡류의 검역업무, 수입 및 국내 농수산물 및 축산물 관리
- 산하 기관인 동식물검역국(Rosselkhoz nadzor)에서 수의, 식물 검역, 농약 사용, 토양, 육종, 농업식물 종자,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러시아 농업부 관련 조직

- 농업부 수의국(The Veterinary Department of the R.F. Ministry of Agriculture)
- 동식물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 곡물품질평가센터(Federal Centre of Quality and Safety Assurance for Grain and Grain products)

2. 식품검사 절차

가. 수입식품신고

- 러시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
- 운송 계약, 착률 증서, Invoice, Packing List를 첨부하여 제출
 - 이 서류들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
 -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 표시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
 - 각각의 물건이 저장될 장소
 - 가공공장이나 도매업자가 물건을 수령할 장소
 - 포장목록, 선적 방법을 표시한 화물 계획(팔레트 등)
 - 세관에 화물 가격을 표시하는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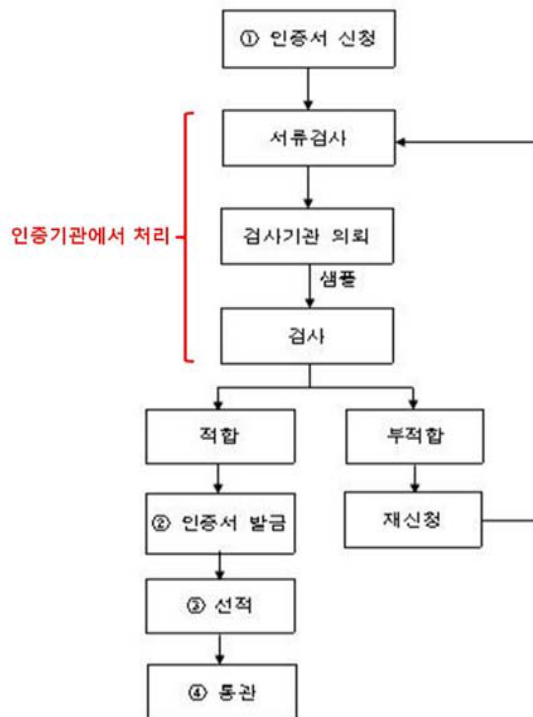


나. 검역 및 관련 인증서 발급

- 수의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 동식물검역국에서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의증명서가 요구
- 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 : 이 증명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GOST를 받기 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러시아 보건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러시아 보건부가 발급하는데 동 과정까지를 한국 SGS(주)에서 대행해 주고 있음. 위생증명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관세동맹에서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하는 통합 상품목록에 해당되는 제품은 관세동맹 내에서 사용 및 판매를 위해 위생증명서 대신 국가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2010년 7월 이전에 러시아에서 발급되었던 위생증명서 품목군도 CU국가등록에 포함되어 러시아 위생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출업체는 추후 국가등록증명서로 대체하면 됨
-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종전의 위생증명서가 강화된 형태로 2010년 7월부터 발효되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3국에 공통적으로 시행중이며 일부 농식품의 경우 GOST-R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임.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검사로 샘플테스트가 필요함. 국가등록 대상품목은 Rospotrebnadzor에 등록해야 함. 국가등록증명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고 발급일부터 제품 공급 또는 생산 중단일까지 사용가능함. 국가등록증명서 획득시 관세동맹국인 벨라루시, 카자흐스탄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함
- 감정서(Expert Conclusion) : 국가등록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국가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함. 해당 그룹의 식품은 통합위생요구에 제품이 적합한지 확인해주는 감정서(Expert Conclusion)를 발급받게 됨. 감정서는 Rospotrebnadzor 또는 그 산하 지역감독국에서 발급함. 감정서는 유효기간이 없고 발급일부터 제품 공급 또는 생산

중단일까지 관세동맹 전 영토에서 사용가능함

- 안전인증서(Safety Certificate) :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에서 발행하는 안전규격인증서로,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은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함, 러시아연방 표준위원회는 해외에서 SGS, MERTCONTROL 등에 인증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SGS(주)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 대리 수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하루 만에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 경우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됨
- 원산지 인증서 : 이 인증서는 관세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인증서는 위생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 위생 역학 검사부처의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다. 식품검사 신청서 제출

- 수입업자는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 식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서류 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센터에 식품 위생 검사를 요청
- 안전 인증서 : 이 인증서는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에서 발급하며 시험 완료를 위해서는 5kg의 샘플이 필요하며 5~7일 정도 소요되고 안전 인증서는 표준화 센터에 의해 수행된 시료검사 및 위생 인증서에 기초가 됨
- 러시아표준규격 인증서(GOST-R) : GOSSTANDART에 의해 정해진 표준에 대한 부합 인증서는 모든 수입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에 가장 중요한 인정서임
- CU 인증서(TR CU Certificate) : 2013년 2월 14일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3국 관세동맹의 관세 관련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 인증이 도입되어 품목별 차이는 보이겠지만 2015년 3월까지 GOST-R 인증이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CU 인증으로 전면 교체될 예정임

마. 검사증명서 발급

-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러시아 관할 세관에 통보

바. 통관 조치

- 러시아 세관은 적합 판정된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면 출하가격에 따라 관세를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식품을 통관시킴
- 만약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는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СИСТЕМА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И МЕТРОЛОГИИ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 РОСС CN.MT42.B00553 Срок действия с 12.10.2011 по 11.10.2014 № 0655659	
ОРГАН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рег. № РОСС RU.0001.11MT42.OOO "СервисТехноПром". 127015, г. Москва, Бумажный пр., д. 14, тел. (495)5182793, факс (495)5858693, E-mail servtechprom@rambler.ru.	
ПРОДУКЦИЯ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измерительный прибор серии РМАС700, моделей: РМАС720, РМАС735. Серийный выпуск.	КОД ОК 005 (ОКП): 42 2860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НОРМАТ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ГОСТ Р 52320-2005 Пп. 5.6, 5.8, разд. 7 ГОСТ Р 52321-2005 П. 7.4	КОД ТН ВЭД России: 9030 84 900 0
ИЗГОТОВИТЕЛЬ "Zhuhai Pilot Technology Co.,Ltd". Адрес: No. 15, Keji 6 Road, Chuangxin Haian, Tangjia High-tech Zone, Zhuhai, Guangdong, China, Китай.	
СЕРТИФИКАТ ВЫДАН "Zhuhai Pilot Technology Co.,Ltd". Адрес: No. 15, Keji 6 Road, Chuangxin Haian, Tangjia High-tech Zone, Zhuhai, Guangdong, China, Китай.	
НА ОСНОВании Протокол испытаний № 2312-1011 от 12.10.2011г., ИЛ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СервисТехноПром", рег. № РОСС RU.0001.21MT82 от 14.04.2011, адрес: 127015, г. Москва, Бумажный пр., д. 14.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Маркировка продукции знаком соответствия производится по ГОСТ Р 50460-92. Инспекционный контроль: 2012г., 2013г. Схема сертификации 3.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гана _____ Шершень А.Ю. инициалы, фамилия Эксперт _____ Никулин Р.П. инициалы, фамилия
Сертификат имеет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ланк разработан ЗАО "СПДРОН", www.spdron.ru, лицензия № 05-05-08/002 ФНС РФ от 05.05.05 № 05-05/002 от 05.05.05, г. Москва, 2011 г.	

■ 러시아표준규격 인증서(GOST-R) 예시 ■

GOST-R(러시아표준규격)

■ 정의 : Gosstandart of Russia (러시아표준규격)

- Gosstandart : 러시아어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국가, 주(state),)와 стандарт(표준)이란 뜻의 영어식 표현인 Gosudarstvenny의 앞 세글자(Gos-)와 표준, 규격을 뜻하는 Standart를 합쳐서(Gosudarstvenny +Standart) 국가규격이란 의미
- 이 기관에서 관리하는 각 규격인증을 GOST 또는 GOST-R로 표기하고 있음

■ 주관기관

- 구 GOSSTANDART(러시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 GOST), 현 ROSSTANDART : www.gost.ru
- 한국SGS : www.sgsgroup.kr

■ 대상품목

-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위생검사증명서(Hygienic Certificate)가 필요한 제품
예) foods, toy, construction and finishing materials, household electric items, objects and articles for medical use, textiles
-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예) 1개만 인도되는 상품,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외교관계 사무소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상품
- 통관시 GOST-R 인증이 필수적인 품목
예)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가정용기기/공구, 바이크, 완구 및 아동복, 자전거, 보육기기, 농산물, 식품, 음료, 담배, 가구, 식기구, 도기류, 화학약품(살충제, 농약), 화학제품, 비료, 세제, 사진 및 영상기기, 고무제품, 목재류, 의류, 신발류, 안전모, 세라믹/금속/동/알루미늄제품, 철금속/비귀금속제품, 원자로, 보일러기기, 전기기기, 선박, 측정, 제어, 정밀, 지상운송수단(철도 차량 및 트레일러 제외), 시계, 악기류, 무기류, 스포츠용품

■ 인증마크



■ 적용국가

- 러시아(GOST-R), 카자흐스탄(GOST-K), 우즈베키스탄(GOST-U), 벨라루시(GOST-B), 몰도비아(GOST-M)

■ 기타

-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없으며, GOST 인증서가 없는 경우 러시아 세관에서 통관을 못하며, 시장에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수거 확인 등의 사후 관리제도를 거침

사. 변동사항 및 이슈

☐ 관세동맹(Customs Union) 출범에 따라 관세동맹 회원국은 인증제도를 CU 인증 (TR CU Certificate)으로 통일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로 구성된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2013년 2월부터 회원국간 표준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각 국가별로 상이한 이전의 표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줌
- 2011년 1월 28일 관세동맹위원회는 ‘관세동맹 범주 내에서 강제요건이 확립되어있는 제품 통합목록’을 발표
 - 대상제품 : 식품, 알코올제품, 사료 및 사료첨가물, 곡물, 담배제품 등 총 66개
- 인증마크 변경 :
 - 예전 GOST, TR 마크에서 EAC 마크로 변경
 - EAC는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의 약자
 - 제품이 관세동맹 기술규제(TR CU)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모든 평가 절차를 통과했음을 증명해주는 마크



■ 관세동맹 CU인증 마크 ■

- GOST-R과 CU 인증 간 변경사항 :
 - 인증비 상승, 공장심사 추가
 - 러시아 바이어 또는 러시아 지사와의 계약서가 존재해야 CU 인증 신청 가능

변경사항	GOST-R	TR CU
신청자	제조사 또는 바이어	러시아 바이어, consignee
준비서류	부분적 영문 제출 가능	러시아어 서류 제출
공장심사	제외	공장심사+샘플 테스트
인증비	200-350만원	800만원-1100만원+공장심사비용
인증서 유효기간	3년	5년
인증서 발급기간	5-10일	공장심사 후 약3주

□ 각 인증별 유효기간

- 러시아의 표준 인증인 GOST-R이 유효한 유효기간은 제품마다 다르며, 이는 관세동맹의 표준규정을 담당하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기술규제 (Technical Regulation)에 명시되어 있음

※ 각 품목별 적용되는 기술규제에 관한 상세내용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참조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ecreg/deptexreg/tr/Pages/default.aspx>

-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규제가 있을 경우, 이 기술규제에서 명시하는 유효기간까지는 GOST-R과 CU 인증이 모두 유효하며, 이후에는 CU 인증만 유효함
- 해당 기술규제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시까지 GOST-R이 유효함
- 현재는 GOST-R과 CU 인증 사이의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식품, 경공업 제품, 차량(부품) 등 상당수 품목이 2015년 2월과 3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제 CU 인증만 유효함
- 하기 표에서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제를 제외한 7개의 식품 관련 기술규제의 유효기간이 2015년 2월 15일에 만료되었으며 해당 품목은 GOST-R 대신 CU 인증을 획득해야 함

기술규제 명칭	만료일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	'15.2.15
식품 라벨링 기술규제(TR CU 022/2011)	'15.2.15
과실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기술규제(TR CU 023/2011)	'15.2.15
유지제품 기술규제(TR CU 024/2011)	'15.2.15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기술규제(TR CU 027/2012)	'15.2.15/ '14.1.1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TR CU 029/2012)	'15.2.15/ '14.1.1
곡물 안전 기술규제(TR CU 015/2012)	'15.2.15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	'15.12.31/ '15.5.1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4/2013)	'15.12.31/ '15.5.1

※ 만료일은 유예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며, 이후부터 CU 인증만 유효함

-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이 두가지로 나뉘어 있음
 - 기술규제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의무적 요건에 제품이 적합함을 확인시켜주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서류가 있을 시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즉,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에서는 기술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이 유통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각 나라의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도 유통 가능함
 - 제품에 대한 강제적인 적합성 평가에 관한 서류가 없고 적합성 마크의 라벨링이 없을 경우 2015년 5월 1일까지 유효함

□ 관세동맹의 기술규제 제정 현황

- 2015년 12월초 기준, 총 35개의 관세동맹 기술규제가 채택된 상태이고 34개의 기술규제가 발효되어 시행 중임
- 현재 식품 관련 채택된 기술규제로는 곡물 안전, 유지제품 안전, 식품 안전, 식품 라벨링, 과실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 우유 및 유제품 안전,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담배제품에 관한 기술규제가 있음

- 2015년 12월초 기준, 채택된 10개의 식품관련 기술규제 중 담배제품을 제외한 9개의 기술규제가 발효되어 시행 중임

기술규제 명칭	발효일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	'13.7.1부터
식품 라벨링 기술규제(TR CU 022/2011)	'13.7.1부터
과실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기술규제(TR CU 023/2011)	'13.7.1부터
유지제품 기술규제(TR CU 024/2011)	'13.7.1부터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기술규제(TR CU 027/2012)	'13.7.1부터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TR CU 029/2012)	'13.7.1부터
곡물 안전 기술규제(TR CU 015/2012)	'13.7.1부터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	'14.5.1부터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4/2013)	'14.5.1부터
담배제품 기술규제(TR CU 035/2014)	'16.5.15부터

-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식품 관련 기술규제로는 알코올제품, 어류 및 어류제품, 가공육 및 그 가공제품, 용기포장된 생수에 관한 기술규제가 있음
- 2015년 1월부터 관세동맹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규제도 점차 확대될 예정임
 - 현재 EEU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유지제품 기술규제(TR CU 024/2011) 개정

- 2015년 1월 27일 ‘유지제품 기술규제(TR CU 024/2011)’ 개정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지령 №2 발표로 관세동맹 유지제품 기술규제 개정이 승인되고 2016년 1월 15일부터 개정본이 발효될 예정임
- 주요 개정 내용:

- 식용 유지제품의 라벨링 조건 변경
 - 운송 패키지 표기정보 상세화 : 중량 포장되지 않은 식용 유지제품 구성성분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성분, 비타민, 향미증진제 의무 표기)은 중량 순서로 표기
 - 적합성 평가 시에 신청인에 관한 것임
- 2016년 1월 15일 이전에 통합식품등록부에 올라간 유지제품 적합성 평가서류들 (정보)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 에서 초콜릿 요건 변경 예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 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에 대한 부가 요건을 확립함
- 주요 개정 내용:
-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 개념과 식별특징 확립
 - 초콜릿 및 상기 제품들 생산 시에 유지제품과 동물성지방 사용 요건
 -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 생산 시에 향미제 및 착색제 사용 요건
 - 식품 안전 기술규제에 변경내용이 채택될 경우에 23개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될 것임: 초콜릿(다크, 일반, 스위트, 엑스트라밀크, 화이트 초콜릿 등), 코코아제품(코코아버터, 코코아조분, 코코아가루 등), 초콜릿스프레드, 코팅용 초콜릿 글레이즈(일반, 밀크, 화이트, 디저트 초콜릿글레이즈) 등
- 기술규제의 신규 별첨 №11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 식별특징’에는 식별특징에 관한 설명이 들어감
- 다크 초콜릿은 설탕, 감미료, 코코아버터 없이 제조 허용
 - ‘초콜릿’ 정의: 같은 코코아 밋(또는) 코코아버터, 설탕 밋(또는) 감미료로 제

조된 식품으로, 유제품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식품성분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 가금육 통조림 품질 규제 GOST 승인

- 201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국가간 표준 GOST 28589-2014 ‘육류통조림. 그 자체 즈에 담겨있는 가금육. 기술조건’이 도입될 예정
- 일상생활, 식이요법, 외식에서 사용하기 위한 고품질의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됨
- 신규 GOST는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에 규정되어있는 생산조직과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있음
- 러시아표준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간기술위원회 №116 ‘가금류·계란가공품과 승화건조법’이 권장되고 있음. 그 자체 즈에 담겨있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의 고기로 제조된 제품의 영양 및 안전 평가기준과 조건을 규정함

□ 식품위생요구 개정

- 2015년 9월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결정 №106을 통해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품들에 대한 통합 위생 요구(Unified Sanitary-Epidemiological and Hygienic Requirements) 제2장 제22부를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식품 생산 시 사용 허가된 식품첨가물 목록 정정
 - 아스코르브산(E300)은 산화방지제와 밀가루 개량제(Flour treatment agent)로 사용 가능
 - 소시지를 포함하는 육류제품에서 인산(E338) 및 인산염의 최대허용치 정정: 육류원료 1kg당 첨가된 인산염 3g, 조제품 1kg당 전체(첨가된 것+자연의 것) 인산 8g

- 본 결정은 관세동맹 기술규제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TR CU 029/2012)’에 이와 유사한 변경이 도입되는 순간부터 발효될 예정임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 ТС ВУ/

Серия ВУ № **0002905**

ОРГАН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Certification Body)

ЗАЯВИТЕЛЬ (Applicant- in most cases must be company registered in Customs Union)

ИЗГОТОВИТЕЛЬ (Manufacturer)

ПРОДУКЦИЯ (Products)

КОД ТН ВЭД ТС (HS Code)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pplied to the product

СЕРТИФИКАТ ВЫДАН НА ОСНОВАНИИ
Certificate is issued on basis (Test reports, factory audits, ISO certificate)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Additional information)

Valid date

СРОК ДЕЙСТВИЯ С _____ ПО _____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олномоченное лицо) органа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Эксперт-аудитор (эксперт)

┃ 관세동맹 CU인증서(TR CU Certificate) 예시 ┃

3. 식품위생 검사기관

가. 검사대상

☐ 관세동맹에서 위생 감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음

- 식품(자연 혹은 가공된 형태로 인간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제품;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제조된 식품 포함)(CU HS코드 02-05류, 07-09류, 11-25류, 27-29류, 32-34류, 35류),
- 담배제품 및 담배원료(CU HS코드 24류)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음

- 미네랄워터(내추럴 테이블워터, 메디컬 테이블워터, 메디컬워터), 병에 든 식수(용기 포장; 어린이용 식품에 이용되는 것 포함), 토닉음료, 알코올제품(저알코올제품, 맥주 포함)
- 전문식품(어린이용 식품, 임산부 및 모유수유 여성용 식품, 식이요법 제품(치료 및 예방), 운동선수를 위한 식품 포함);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산을 위한 원료, 유기농제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제조된 식품(유전자변형미생물체 포함)
- 식품첨가물, 복합식품첨가물, 향미제, 식물성 추출물(향미물질 및 원료성분으로 이용되는 것), 미생물 배양체 및 박테리아 스타터, 기술적 보조제(효소제 포함)

☐ 감정서(Expert Conclusion) 발급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함유하지 않는 식품 및 특수식품첨가물이 아닌 식품(자연 또는 가공된 형태로 인간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제품)

나. 수의검역

☐ 수의검역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에서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

- 러시아 농업부 수의국
- 수의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 각 주 및 지방자치공화국의 수의부처
- 시 및 기타 행정조직 수의부처
- 각 지방의 동물질병연구소, 기타 수의연구소
- 지방 수의병원
- 국립 수의검사소 등 기타

☐ 수의검역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음

- 모든 종류의 동물
 - 수의 연방법에 따른 '동물'의 정의: 가축과 기타 생산적/비생산적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동물(꿀벌 포함), 어류, 어란, 수생포유동물, 수생 무척추동물, 기타 양식대상 및 수생생물자원
-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취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 가능
 -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함
 -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함
- 우유 및 유제품
 -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취득한 제조업체의 제품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사료
- 동물 의약품 등

☐ 수의 연방법 개정사항

- 러시아의 동물 관련법 ‘수의 연방법’은 1993.5.14일에 제정되어 시행됨. 2015년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수의법 개정 및 러시아 개별법률 개정 에 관한’ 연방법 №243-FZ에 서명하여 개정판이 2015.7.24일부터 발효됨
- 신규 수의 연방법에 추가된 사항 : 예방, 진단, 치료, 제한, 기타조치, 검역설정 과 해제, 감염/동물병 확산방지 제한조치, 수의동반서류 작성 관련 규정 등
- 정부는 동물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록 및 관련 위생 감정검사 절차 확립
- 수의위생 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음
 - 식물성산물 사료첨가제 및 사료
 - 식품시장 판매 비산업용 식물성산물제품
 - 국방, 내무, 국가안보, 안전보장 분야 관련기관 이용 제품

다. 식물검역

- ☐ 식물검역은 러시아연방 동식물검역국에서 담당하며 관련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검사담당 직원은 국경에서 제품을 검사해야 함

☐ 러시아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대한 식물위생검역요건

- 2010년 12월 29일자 러시아 농업부령 №456의 별첨 ‘러시아연방 영토로 규제 제품 반입,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시 식물검역규정’에는 ‘규제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제기되는 러시아연방의 식물위생검역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본 규정은 러시아연방 영토로 검역대상이 침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상기 ‘규제제품 목록’은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8에 의해 승인된 ‘관세동맹의 관세국경과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식물위생검역관리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을 의미함
 ※ ‘규제제품 목록’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http://www.fsvps.ru/fsvps-docs/ru/laws/tsouz/tsouz_fitocontrol_list.pdf
- 규제제품 종류는 관세동맹의 대외경제활동 단일상품명명법(CU HS코드)에 따른 것임.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출범 이후 EEU HS코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혼용되어 있음
- 반입되는 규제제품에는 2014년 12월 15일자 러시아 농업부령 №501에 의해 승인된 ‘검역대상(식물병해충, 잡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이 없어야 함. 이러한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은 규제제품의 구체적인 종류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규제제품의 수출국 혹은 원산지국가에 특징적으로 나타남. 단, 수입산 규제제품의 반입, 운송, 보관, 사용 과정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식물위생검역요건에 의해 규정된 경우들은 예외로 함
 ※ 새로 발표된 ‘검역대상(식물병해충, 잡초) 목록’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http://www.fsvps.ru/fsvps/laws/4126.html>
-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이 존재할 시에 제품의 소유주는 검역대상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하는 기술로 가공 혹은 소독처리를 보장해야 함
-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그룹에 해당되는 규제제품은 규제제품 수출국(재수출국)의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해야 함
- 본 규정의 별첨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부터 규제제품의 수출이 전제되는 경우에, 수입상은 규제제품이 러시아연방의 식물위생요건에 부응함을 보장해줘야 함. 이러한 경우에 수입상은 전제된 국가에서부터 수입되는 규제제품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식물위생요건과 검역대상에 관하여 식물검역영역에서 관리 감독 기능을 집행하는 연방집행권력기관에 문의할 권리를 가짐

- 검역대상이 있을 시에는 규제제품 로트를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금지하거나 혹은 세관경유의 세관절차에 규제제품 로트가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조건들을 준수하는 규제제품 로트를 반입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됨

□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 반입 시 식물위생검역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 로트의 러시아연방 반입은 수출국의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해야 실현될 수 있음. 이러한 식물위생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식물검역법 요건에 규제제품이 적합함을 증명해주는 것임
-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각 국가영토에서 검역대상 확산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는 국가에서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국가에서 반입되는 규제제품은 의무적인 검사를 받아야 함

□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식물위생검역요건’은 아래와 같음
-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의 러시아연방 반입은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연중 허가되고 있음
- 향후 가공을 위해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은 검역잡초 종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종자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하는 기술로 가공해야 함. 생존력 있는 종자와 함께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을 가공장소에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의 웨이스트는 종자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하는 기술로 가공, 폐기처분해야 함

- *Striga* sp.sp의 종자와 함께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을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은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Striga* sp.sp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될 수 있으며, 단, 오직 *Striga* sp.sp이 없는 지역들에서부터 반입될 수 있음
 - 이는 러시아연방으로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선행되는 최소 3년간의 검사결과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부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주무부처는 이에 관한 관련정보를 제공함
 - *Striga* sp.sp 확산 국가들에서의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의 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한 후에 허용됨
- *Stenocarpella macrospora*, *Stenocarpella maydis*, *Cochliobolus heterostrophus* race T, *Pantoea stewartii* 병원균이 있는 가공용 옥수수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음
-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은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러시아연방 영토 반입이 허용될 수 있으며, 단, *Tilletia indica*이 없는 지역들에서 원산지인 경우에만 한함. 이는 현장조사와 실험실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수출국의 주무부처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 반영되어야 함.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밀과 밀가공제품의 반입과 사용은 오직 실험실 감정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허가됨
 - *Tilletia indica*이 발견되는 경우에 밀과 밀가공제품은 반송, 폐기처분함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의 러시아연방 반입은 노브고로드 주, 볼로그드 주, 키로프 주, 페름 주, 스베르들롭스크 주, 튜멘 주, 톰스크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무르만스크 주, 카렐리야공화국, 아르한겔스크 주, 코미공화국, 캄차트카 주, 사할린 주, 마가단 주, 사하공화국의 제분업체들과 제빵업체들에서 공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직 11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간 상트페테르부르크항과 북빙양항, 마가단항,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항을 통해서만 실현됨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 반입된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의

- 하역은 항구에서 고립된 선착장에서 이루어지며 운송수단인 선박은 운송을 마친 후 처리를 해야 함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 반입된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을 소매유통에서 판매하고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 반입된 밀과 밀가공제품을 담았던 패키지는 최소 3시간 11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방법으로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폐기처분해야 함
- 본 규정의 별첨에 기재되어 있는 *Trogoderma granarium* 확산 국가들에서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된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은 그 속에서 활성상태에 있는 임의의 살아있는 대상들이 발견될 시에 *Trogoderma granarium*의 유충을 제거하는 처리조건에 따라 운송수단에서 예방소독처리를 하며,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함
- *Trogoderma granarium* 확산국이 원산지인 맥아를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은 운송수단에 대한 식물위생검역검사를 완전히 다한 이후에만 허용되고 있고, 사용은 창고 검사 결과에 따라 허용됨
- 콩과식물과 그 가공제품에서 살아있는 *Callosobruchus* spp.이 발견될 시에 곡물은 소독처리를 하며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하며, 운송수단도 소독처리해야 함

□ 종자 및 재식재료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종자 및 재식재료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식물위생검역요건’은 아래와 같음
- 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검역유해생물체들에 의해 감염된 식물들의 재식재료 및 종자는 러시아연방 영토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반입 지점들에서 종자 및 재식재료 로트는 동반하는 식물위생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육안검사를 받게 됨

- 종자 및 재식재료는 검사, 선별(샘플링), 샘플감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포장에 있어야 함
- 식물위생실험실감정조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 종자 및 재식재료를 용도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감정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규제물질은 검역유해생물체들이 확산될 수 없는 조건 하에 보관되어야 함
- 종자 및 번식 목적으로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된 감자는 실제 종자, *Solanum* 속의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들의 괴경(주로 *S. tuberosum*), 미니괴경(양료배지에서 재배된 감자의 마이크로프랜즈에서 파생된 괴경), 마이크로프랜즈(조직배양에서 *Solanum* spp.를 함유하는 미소괴경을 포함하는 식물들)를 포함함. 위에 언급되지 않은 번식재료는 *Solanum*속의 기타 기는줄기를 형성하는 종들,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들 혹은 하이브리드를 포함할 수 있음
- 씨감자 로트들은 새로운 용기에 포장되어야 함
- 씨감자 로트들에서 토양의 존재는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토양이 허용되고 있음
- 분화류 식물과 폐쇄뿌리체계를 갖는 식물은 검역유해생물체들이 없는 영양분기질에 심어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되어야 함
- 검역유해생물체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의 토양 덩어리가 뿌리에 있는 식물의 러시아연방 영토 반입은 토양과 함께 확산될 수 있는 검역대상들 모두에 대한 필수적인 토양샘플 실험실감정검사를 포함하는 식물위생검역관리 시행 시에 허용되고 있음
-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과수, 장과식물, 관상식물, 포도나무(딸기 제외)의 재식재료는 잎, 꽃, 과실이 없는 휴면상태이어야 함
-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수화물, 핸드캐리, 우편으로 종자 및 재식재료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검역유해생물체들이 발견된 반입된 종자 및 재식재료 로트들은 소독 처리되어

야 하며,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송 혹은 폐기처분됨

- 종자 혹은 재식재료 로트에서 검역유해생물체들 발견 시에 오직 로트의 감염된 부분만 소독처리, 반송 혹은 폐기처분됨
 - 씨감자는 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진균·세균·바이러스·선충의 병원균이 없는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장과, 핵과, 견과류의 묘목, 삽수, 접수는 식물해충, 진균·세균·바이러스·선충의 병원균이 없어야 하며 상기 해충 및 병원균이 없는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산호세각지벌레(*Quadraspidotus perniciosus*)와 뽕나무각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지역들, 즉, 해당 생물체들이 검역의미를 갖지 않는 국가 혹은 국가의 일부에서부터 식물들의 재식재료 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단, 수출국에서 식물들을 소독 처리하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이는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본 규정 별첨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산호세각지벌레(*Q. perniciosus*)와 뽕나무각지벌레(*P. pentagona*)가 확산되어 있는 지역들에서부터 재식재료 및 접목재료의 반입 및 판매는 오직 소독처리 이후에만 허가됨
- Cherry rasp leaf nepovirus가 없는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들에서부터 사과나무, 벚나무, 양벚나무의 묘목, 삽수, 접수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으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수입산 종자 및 재식재료를 사용하여 시행된 파종(재식)은 식물위생검역조사를 받게 됨
- 1997년 12월 17일자 ‘채종업에 관한 연방법(종자관련법)’ №149-FZ에 따르면, 농업식물 종자 로트의 러시아 반입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됨:
 - 종자 로트에 종자의 품종품질 및 파종품질을 증명해주는 서류들이 작성되어 있

- 는 경우에 반입 허가됨. 종자의 품종품질인증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증서 혹은 수출국의 국립종자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자의 파종(재식)품질인증서는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인증서 혹은 수출국의 국립종자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종자 로트는 러시아연방법과 국제법규범들에 규정되어있는 요건들에 부합해야 함
 - 종자 품종은 러시아 영토에서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단, 학술연구, 국가테스트, 러시아 반출용의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종자 로트는 예외로 함
- 러시아 세관기관들이 러시아로 반입된 식물품종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러시아 농업부에서 발행한 ‘반입된 식물품종 종자에 대한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 초본’을 제출함. 초본에 명시되어있는 품종 명칭이 국가등록부에 부재하는 경우에 그 품종은 러시아영토로 반입할 수 없음
 - 러시아로 반입되는 농업식물 종자 및 재식재료는 그 품종품질 및 파종품질을 증명해주는 3가지의 서류가 요구됨:
 - 종자 및 재식재료의 품종품질에 대한 인증서
 - 종자 및 재식재료의 파종품질에 대한 인증서
 - 반입된 식물품종 종자에 대한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 초본

□ 과실류, 채소류, 감자(식용 및 공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과실류, 채소류, 감자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식물위생검역요건’은 아래와 같음
- 검역대상들 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들과 함께 장과, 핵과, 감귤류, 기타 식물의 과실류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있는 경우들은 제외함
- 과실류와 채소류의 개별 포장에는 제품명, 원산지, 수출자 또는/혹은 재수출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있어야 함

- 과실류와 채소류는 국가식물위생검역관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포장에 있어야 함
- 로트에서 채취된 과실류와 채소류의 샘플(샘플들)에서 검역유해생물체들이 검출되면, 이 로트는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송 혹은 폐기처분함
- 감자와 기타 덩이줄기채소 및 뿌리채소에서 토양 불순물은 제품 중량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페트로자보드스크, 식티브카르, 솔리캄스크, 페름, 예카테린부르그, 옴스크, 톰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올란-우데, 치타, 블라고베센스크, 하바롭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시를 연결하는 라인을 따라 위치하는 잠재적인 서식지역 경계보다 더 북쪽에서는 배속벌레(*Grapholitha molesta* Busck.)와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Wisgh)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장과 및 핵과식물 과실류의 반입과 판매가 연중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
- 위험지역, 즉, 상기 명시된 라인보다 더 남쪽에서는 배속벌레(*Grapholitha molesta* Busck.)와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Wisgh)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장과 및 핵과식물 과실류의 반입과 판매가 10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허가되고 있음
 - 4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장과 및 핵과식물 과실류에 배속벌레와 복숭아심식나방이 완전히 없어야 함
 - 이는 해당 제품의 러시아연방 반입 시에 육안검사 후에 확인되며 필요시에는 해당 규제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확인됨
-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Wied.)와 *Conotrachelus nepuphar* Hb.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과실류의 경우, 로스토프 주와 보로네주 주의 행정경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의 반입은 제한 없이 허용되며, 이 경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의 반입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허용됨
 - 흑해와 아조프해의 남부항구들을 통해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Wied.)와 *Conotrachelus nepuphar* Hb.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감귤류 반입 시에 로스토프 주와 보로네쥬 주의 행정경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로 반출이 허가되고 있음. 단, 냉동차량과 기차의 냉동칸에서 감귤류를 운송하는 조건에 한함

- 상기 명시된 경계보다 더 남쪽 지역에서 냉동차량과 기차의 냉동칸을 오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로스토프 주와 보로네쥬 주의 행정경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Wied.)와 *Conotrachelus nepuphar* Hb.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과실류의 사용은 소독처리를 실시한 경우에 연중 허용되고 있음
- 러시아의 위험지역 영토, 즉, 토양-기후 조건이 검역대상이 품토에 적응하게 해주고 검역대상이 확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영토에서 검역유해생물체들에 의해 감염된 제품의 운송은 차양이 있고 정상상태의 밀봉된 기차칸, 유개화물자동차, 냉동차 혹은 컨테이너에서만 허용됨
- 과실류와 채소류 반입 시에 식물성산물 재료의 깔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감귤류 과실의 냉동은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에 맞서는 모드로 여름철(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에 냉장실에서 실시함. 최소 20일, 이 기간 동안 4.5℃ 이하의 선창 온도로 러시아연방 항구까지 항해를 지속할 시에 하루에 최소 3회 각각의 선창과 각각의 선창 갑판에서 온도를 측정하면서 냉동선에서 항해하는 동안 냉동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됨

□ 절화(생화) 화훼류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절화(생화) 화훼류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식물위생검역요건’은 아래와 같음
- 검역대상들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검역대상들과 함께 절화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생화-절화의 개별 포장에는 제품명, 원산지, 수출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있어야 함
- 생화-절화는 식물위생검역관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포장에 있어야 함
- 검역대상들에 감염된 생화-절화 로트는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함
- 몇 개의 로트로 이루어진 화물에서 생화-절화 로트의 감염이 발견될 시에 오직 감염된 로트만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함
- 국화(*Chrysanthemum*, *Dendranthema*) 생산 지역, 장소, 구역은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국화화부병균(*Didymella ligulicola* (K.F. Baker, Dimock & Davis) von Arx)과 국화흰녹병균(*Puccinia horiana* P. Henn.) 확산국가들에서 국화화부병균과 국화흰녹병균이 없어야 하며, 이는 발송 이전에 진행되는 3년간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부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이에 관하여 기재함
-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수화물, 핸드캐리, 우편으로 1~2개의 생화 부케의 반입은 식물위생검역관리 결과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 목재포장재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목재포장재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식물위생검역요건'은 아래와 같음
-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목재포장재(수리된 목재포장재의 부분들도 포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독처리해야 하며 마크 표시가 있어야 함
-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위생검역관리(감독) 시행 시에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음. 주무부처의 책임자는 상기 규제제품 검사 시에 국제기준의 특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함

- 마킹이 부재할 시에 목재포장재의 반입은 식물위생검역관리 결과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 소독처리, 반송 혹은 폐기처분해야 하는 목재포장재는 검역대상들이 발견된 순간부터 적합한 식물위생조치들이 적용되기 전까지 검역대상들이 확산될 수 없는 조건 하에 보관해야 함

□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 반입 시 식물위생검역요건’은 아래와 같음
-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제품은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될 수 있음
-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의 경우, 제품의 식물위생검역상태에 대한 식물위생검역 모니터링을 선별적으로 실시함
-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각 국가영토에서 검역대상 확산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는 국가에서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국가에서 반입되는 규제제품은 의무적인 검사를 받아야 함
- 식물위생검역 모니터링 결과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된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에서 검역대상이 검출된 경우에, 그러한 제품에 대한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들이 적용되게 됨

- 한반도와 그 인접 섬들(한국, 북한)에서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수출국의 영토에 확산되어있는 검역대상들

○ 해충

국명 - 라틴명	러시아연방 영토에 식물위생위험을 줄 수 있는 규제제품 종류 (CU HS코드)
담배거세미나방 - <i>Spodoptera litura</i> Fabr.	0601;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0702 00 000; 0704; 0705; 0707 00; 0708; 0709; 1214; 2530 90 980 0
유리알락하늘소 - <i>Anoplophora glabripennis</i> (Motschulsky)	0106 90 009; 0604 91 900 0; 0604 99 100 0; 4401 10 000; 4401 21 000 0; 4401 22 000 0; 4401 30; 4403 (4403 10 000 제외); 1404 90 000 0; 4401 30 900 0; 4406 10 000 0; 4407; 4409; 4415; 4418 40 000 0; 4416 00 000 0; 4418 10; 4418 20
미국흰불나방 - <i>Hyphantria cunea</i> Drury	0604 91 900 0; 0604 99 100 0; 0806;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2530 90 980 0; 1404 90 000 0; 4401 30 900 0
배속벌레 - <i>Grapholitha molesta</i> Busck.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2530 90 980 0
산호세깍지벌레 - <i>Quadraspidiotus perniciosus</i> Comst.	0106 90 009; 0602 (0602 90 100 0 제외);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0604 91 900 0 0604 99 100 0; 0808
곡식수시령이 - <i>Trogoderma granarium</i> Ev.	0801; 0802; 0803 00; 0804; 0805; 0806; 0813; 1001; 1002 00 000 0; 1003 00; 1004 00 000 0; 1005; 1006; 1007 00; 1008; 1101 00; 1102 (1102 90 900 1 제외); 1104; 1106 10 000 0; 1107; 1201 00; 1202; 1203 00 000 0; 1204 00; 1205 (1205 10 900 0 제외); 1206 00 (1206 00 910 0 제외); 1207; 1208;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1 (1211 30 000 0, 1211 40 000 0 제외); 1212 99 700 0; 1801 00 000 0; 1802 00 000 0; 2302; 2304 00 000; 2305 00 000 0; 2306 (2306 49 000 0 제외); 2309 90 950 0; 2309 90 990 0; 9705 00 000 0; 2309
감자나방 - <i>Phthorimaea operculella</i> Zell.	0701; 2530 90 980 0
칼로스브루투스 속의 콩바구미과 - <i>Callosobruchus</i> spp.	1201 00

국명 - 라틴명	러시아연방 영토에 식물위생위험을 줄 수 있는 규제제품 종류 (CU HS코드)
복숭아심식나방 - <i>Carposina niponensis</i> Wlsgh.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2530 90 980 0
뽕나무깍지벌레 - <i>Pseudaulacaspis pentagona</i> (Targ.-Toz.)	0106 90 009; 0602 (0602 90 100 0 제외);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0604 91 900 0 0604 99 100 0; 0808
필록세라(포도나무뿌리진디) - <i>Viteus vitifoliae</i> (Fitch.)	2530 90 980 0
왜콩풍덩이 - <i>Popillia japonica</i> Newm.	0601;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0701; 0702 00 000; 0703; 0706;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1211 (1211 30 000 0, 1211 40 000 0 제외); 2530 90 980 0

○ 식물병

감자꽃마름병 - <i>Ralstonia solanacearum</i> (Smith) Yabuuchi et al. (=Pseudomonas solanacearum (Smith) Smith)	0106 90 001 0; 2530 90 980 0; 3002 90 500 0; 3002 90 900 0
벼흰잎마름병 - <i>Xanthomonas oryzae</i> pv. <i>oryzae</i> (Ishiyama) Swings et al.	0106 90 009; 1006; 1104;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3 00 000 0; 2530 90 980 0; 3002 90 500 0; 3002 90 900 0; 9705 00 000 0; 4601
감자암종병 - <i>Synchytrium endobioticum</i> (Schilb.) Percival	0601; 0701; 0706; 0714 20 100 0; 0714 90 110 0; 1212 91; 1214; 2530 90 980 0; 2703 00 000 0; 3101 00 000 0
자두곰보병 - Plum pox potyvirus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 잡초

돼지풀 - <i>Ambrosia artemisiifolia</i> L.	0708; 0712 90 110 0; 0713; 1001; 1002 00 000 0; 1003 00; 1004 00 000 0; 1005; 1006; 1007 00; 1008; 1104; 1107; 1201 00; 1204 00; 1205 (1205 10 900 0 제외); 1206 00 (1206 00 910 0 제외); 1207;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3 00 000 0; 1214; 2302; 2304 00 000; 2306 (2306 49 000 0 제외); 2309 90 990 0; 2530 90 980 0; 3101 00 000 0; 9705 00 000 0; 0904-0910; 1404 20 000 0; 1404 90 000 0; 2103 90 900 9; 2505; 2517 10 100 0; 5101 11 000 0; 5102; 5103 10 100 0; 5201 00; 5202; 5301; 5302
새삼속 - <i>Cuscuta</i> spp.	0601; 0708; 0712 90 110 0; 0713; 0806; 1001; 1002 00 000 0; 1003 00; 1004 00 000 0; 1005; 1006; 1007 00; 1008; 1104; 1107; 1201 00; 1204 00; 1205 (1205 10 900 0 제외); 1206 00 (1206 00 910 0 제외); 1207;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3 00 000 0; 1214; 2302; 2304 00 000; 2306 (2306 49 000 0 제외); 2309 90 990 0; 2530 90 980 0; 3101 00 000 0; 9705 00 000 0; 0904-0910; 1404 20 000 0; 1404 90 000 0; 2103 90 900 9; 2505; 2517 10 100 0; 5101 11 000 0; 5102; 5103 10 100 0; 5201 00; 5202; 5301; 5302

□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식물위생검역관리 이행절차 규정 개정

- 2014년 11월 14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식물위생검역관리 이행절차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효함. 해당 개정은 2014년 10월 9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93에 의해 승인됨
- 목적지에 있는 주무부처의 담당자에게 규제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2회 또는 그 이상)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세동맹의 단일관세영역 내에서 이동 시에 규제제품 발송지에서 규제제품 소유주에게 30일간 식물위생증명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목적지에서 규제제품 도착에 관한 통지는 도착일 다음날 근무일 내에 이행되어야 함

라.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신선/냉장/냉동 생선, 해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은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바다 및 민물생선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기생충이 허용범위 내에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면 수출 가능함
- 사료로 유전자 변형식품은 제공될 수 없음
- 제품 선적은 온도규정에 상응하지 않게 처리된 경우 러시아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함

제2절 수입제한 현황

☐ 유럽연합(EU)

- 2013년 7월 1일부터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됨
 - 감자
 - 과수·관상식물·산림관상식물의 재식재료
- 원산지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단, 국제식물위생조치기준에 입각하여 검역대상 무발생 장소로 인정된 폴란드, 헝가리, 독일 영토에 위치한 생산포장과 핀란드 양묘장 3곳은 제외함
- 2015년 4월 25일부터 불가리아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규제제품 러시아연방영토 반입 금지

- 2015년 9월 1일부터 불가리아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임의의 규제제품 러시아 반입 금지
 - 금지 사유는 위조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첨부한 규제제품 반입 때문

□ 폴란드

- 2014년 8월 1일부터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그리고 제3국에서 러시아로 폴란드 원산지의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 한시적 제한
 - 신선 사과, 배, 마르멜로 (CU HS코드 0808)
 - 신선 살구, 체리, 양벚, 복숭아, 넥타, 자두, 가시자두(슬로우) (CU HS코드 0809)
 - 신선 또는 냉장의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이와 유사한 식용의 Brassica속의 채소 (CU HS코드 0704)
 - 신선 또는 냉장의 기타 채소 (CU HS코드 0709). 단, 버섯 제외
- 2014년 10월 6일부터 폴란드 국립육종·식물보호감독국이 발행한 폴란드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규제제품 러시아 반입 금지

□ 몰도바

- 2014년 7월 21일부터 몰도바에서 러시아로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 한시적 제한
 - 신선 사과, 배, 마르멜로 (CU HS코드 0808)
 - 신선 살구, 체리, 양벚, 복숭아, 넥타, 자두, 가시자두(슬로우) (CU HS코드 0809)
- 몰도바에서 오는 승객들의 핸드캐리와 수하물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식물성제품 러시아 반입 불허
- 2015년부터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의 검사를 통과한 일부 몰도바업체들의 제품은 반입 허가되고 있는 중임

□ 우크라이나

- 2014년 6월 16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식용감자(CU HS코드 070190) 반입 한시적 제한

- 2014년 7월 28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부터 핸드캐리, 수하물, 우편을 통한 식물성제품 반입 한시적 제한
- 2014년 8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대두, 해바라기씨, 옥수수, 대두박 반입 한시적 제한
- 2014년 10월 22일부터 우크라이나 원산지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오는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모든 규제제품 반입 한시적 제한
- 2015년 3월 30일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식물위생요건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 허가됨: 나무로 만든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팻릿, 박스팻릿,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팻릿칼러(CU HS코드 4415)
- 2015년 2월 26일부터 제재목(CU HS코드 4407) 반입 허가

□ 그루지야

- 2015년 10월 28일부터 그루지야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대한 한시적 반입제한 폐지
- 그루지야에서 오는 시민들의 핸드캐리와 수하물을 통해 이동하는 규제제품은 러시아 반입 불허

□ 벨라루시

- 2014년 8월 7일자 러시아정부령 №778에 명시된 제재상품목록에 포함된 식물성제품을 벨라루시에서 제3국으로 이동할 시에 2014년 11월 24일부터 러시아를 통한 경우 제한
 - 이러한 제품은 관세동맹 외부국경의 러시아구역에 위치하는 검문소들을 통해서만 이동 가능

□ 방글라데시

- 2015년 5월 6일부터 방글라데시에서 러시아로 감자 반입 한시적 제한, 그리고 방글라데시 원산지의 감자 반입도 한시적 제한
 - 제한 사유는 방글라데시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감자에서 감자꽃마름병균(*Ralstonia solanacearum*)이 수차례 검출되었기 때문

□ 이집트

-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감자가 감자꽃마름병균(*Ralstonia solanacearum*)과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에 감염된 경우들이 2015년에 수차례 검출되어 동식물검역국은 일부 이집트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에 대해 2015년 4월 9일부터 한시적 반입 제한

□ 파키스탄

- 2014년 2월 24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식용감자 반입 금지. 그러나 러시아식물위생요건을 엄수하는 조건 하에 13개 파키스탄 수출업체들은 제외됨

□ 서방 식품 금수조치

- 2014년 8월 7일에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을 구현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러시아연방정부결의에 따라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원산지의 일부 식품과 농산물의 러시아 반입이 전면 금지됨
- 식품 금수조치 도입 사유는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병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유럽연합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강경책이라 할 수 있음. 이전에 유럽연합은 6월 25일부터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산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발효한 바 있고 화물운송업체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금지 도입 등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음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제재는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음. 이와 같이 러시아시민과 러시아회사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국가 원산지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가 8월 7일부터 도입됨. 2014년 8월 6일자 대통령령 № 560에 규정되어있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생산자들의 이해와 특수주민그룹의 이해를 손해 없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정부당국은 밝힘
- 러시아 연방정부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농산물, 원료, 식품 목록을 승인하였고, 수입금지대상이 되는 원산지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금지대상 품목은 1년간 러시아 수입이 전면 금지됨

CU HS코드	수입 금지 품목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0202	쇠고기(냉동)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0210 중에서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육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우유와 유제품
0701, 0702 00 000, 0703, 0704, 0705, 0706, 0707 00,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채소, 식용의 뿌리와 괴경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실과 견과류
1601 00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함)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1901 90 110 0, 1901 90 910 0	식물성지방을 기제로 한 치즈와 커티지치즈를 포함한 조제식품
2106 90 920 0, 2106 90 980 4, 2106 90 980 5, 2106 90 980 9	조제식품(식물성지방을 기제로 한 우유함유제품)

- 러시아시민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들과 어린이식품은 이 제한조치에 해당되지 않음
- 수입금지 제품 목록 변경 및 확대
 - 러시아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변경 목록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총리가 8월 20일에 관련 결의서에 서명함
 -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에서 반입이 금지된 연어와 브라운송어의 치어, 씨감자, 탈유당우유, 파종용 양파, 생물학적 활성첨가제와 비타민이 수입금지 목록에서 제외됨
 - 금지대상품목에 포함되는 채소와 뿌리 중에서 씨감자, 씨에서 자란 알양파, 파종용 하이브리드 단옥수수, 파종용 완두콩 제외됨
 - 우유와 유제품 중에서 탈유당우유와 탈유당유제품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 생물학적 활성첨가제, 비타민-미네랄 복합제, 향미첨가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이 제재대상에서 해제됨
 - 신규 결의서에는 활어 수입금지가 별도로 등록됨. 단, 대서양연어와 브라운송어의 치어 반입과는 연관되지 않음

제3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1. 신선농산물 검역

가. 수출 가능품목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감자,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나. 수출 불가품목

- 곡류 : 콩, 팥, 녹두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2. 과실류 수출요건

가. 사과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사과 과신파리가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나. 배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Numonia pyrivorella*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다. 복숭아, 자두, 살구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관련 문의처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러시아 검역요건 담당부서 : T. 031-420-7671

라. 러시아 식물성산물 등록 신청업체 현황

- 현재 러시아로 식물성산물(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에 등록 신청을 한 한국 수출업체는 총 54개 업체임
- 신청 품목으로는 인삼, 홍삼, 홍삼 드링크, 사과, 딸기, 체리 토마토, 배, 버섯, 쌀, 라면, 파프리카, 멜론, 자두, 수박, 감, 유자차, 생강차, 블랙베리 차, 녹차, 딸기잼, 포도잼, 사과잼, 화훼류, 아스파라거스, 양파, 양배추, 새송이버섯, 당근, 김치, 오이 등이 있음

3. 축산물 수출요건

가. 한국의 동물감염에 대한 제한조치 현황

- 2000년 - 구제역
- 2002년 - 구제역
- 2004년 - 조류 독감

나. 수입제한 세부내역

제한사유	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살아있는 가금류, 부화할 수 있는 알, 가금육과 모든 종류의 가금생산물, 가금류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가금류 사양·도살·절단용 중고 장비	13-8-01/799	'04.1.23.
구제역 (FMD)	2010년 2월 11일부터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 모든 종류의 가축생산물(완제품, 원료,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도살해서 생긴 부산물 포함), 가축사양·도살·가공용 중고 장비, 동물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FS-GK-2/1204	'10.2.11.
	2014년 5월 30일부터 동물용 사료 생산에 이용되고 열처리하지 않은 돼지피제품(HS코드 3502에 의거)과 번식용 및 고기용 돼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공급이 한시적으로 제한됨 (*단,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7에 의해 승인된 수의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품에 요구되는 단일 수의(수의-위생)요건을 준수할 시에, 동물용 사료 생산에 이용되고 열처리한 피제품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러시아연방 영토로 공급이 가능함)	FS-AS-8/9066	'14.5.29
	2010년 2월 11일자 지시 №FS-GK-2/1204에 의해 도입된 한국에서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제한은 화학적 및 미생물적 합성의 사료첨가제에는 적용되지 않음	FS-EN-7/18926	'14.11.3
	2004년 1월 23일자 지시 №13-8-01/799, 2010년 2월 11일자 지시 FS-GK-2/1204, 2014년 5월 29일자 지시 FS-AS-8/9066, 2014년 11월 3일자 지시 FS-EN-7/18926에 의해 도입된 제한조치들은 비생산적인 동물(non-productive animal)용의 조제사료를 한국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반입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이 조제사료는 열처리(섭씨 70도 이상의 온도로 최소 20분)를 거친 것으로 소매포장된 것에 한함	FS-NV-8/3508	'15.3.6

다. 수입축산물 수의검역관련 인증

번호	인증 내역	승인일자	관리번호
1	Veterinary certificate for pork expor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99.1.25.	
2	Veterinary certificate for fish and seafood (fishery products) and products of their processing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07	
3	Veterinary certificate for fatten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4	Veterinary certificate for breed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5	Veterinary certificate for slaughter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 육류 및 육류제품 부문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 한국은 육류 및 육류제품 부문에서 돼지고기와 돼지의 식용설육 및 비계를 러시아로 수출한 바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이전에 러시아 수출 허가를 받았던 모든 한국업체들이 2010년 2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수출 중단된 상태임

번호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활동유형	상태	관리번호
1	S 173, P 57	Daesang Farmsco Co., Ltd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설육 및 비계	돼지 도살,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FS-GK-2/1204 from11.02.2010
2	S 203, P 158	Korea Cold Storage Co.,Ltd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설육 및 비계	돼지 도살,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10년 2월 11일자 FS-GK-2/1204 from11.02.2010
3	P 357	Modern Co., Ltd.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설육 및 비계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FS-GK-2/1204 from11.02.2010
4	S 196, P 195	NACF Moguchon Kimje Meat Processing Plant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설육 및 비계	돼지 도살,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FS-GK-2/1204 from11.02.2010

※ 상기 한국업체들은 '한시적 제한' 상태임

☐ 사료 및 사료첨가물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번호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6410000 -502-2 009-00 02	EreBon Co., Ltd	비생산적인 관상용 동물, 조류, 어류용의 사료	'15.2.13부터 수입허가	FS-NV-8/2189 from13.02.2015
2	630000 0-502-1 987-00 01	Je-Il Feed Ltd	비생산적인 관상용 동물, 조류, 어류용의 사료	'15.2.13부터 수입허가	FS-NV-8/2189 from13.02.2015
3	KRF-00 31	OURHOME Co., Ltd.	어류사료분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4	KRF-00 32	OURHOME Inc.	어류사료분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 상기 한국업체들은 '제한 없음' 상태임

4. 수산물 수출요건

☐ 어류 및 해산물 부문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번호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 29	ASIA COLD STORAGE CO., 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2	KRF-00 20	Bada Myeongga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3	KRF-00 29	BORIM LOGISTICS CO.,LTD. BUSAN COLD STORAGRE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4	KRF- 0005	C.K. GLOBAL CO.,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5	KRF- 0014	CENTRAL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번호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6	KRF-0028	COLD STORAGE INTER-BURGO II CO., 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7	384-16	COSIS Co., LTD	Fish and seafood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 15.04.2009
8	KRF-0013	DAE WON FOOD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9	54-1	Daesang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09.4.15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 15.04.2009
10	KRF-0019	Dongpyo co., 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11	KRF-0025	DONGRIM FOO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12	KRF-0001	DONGWON COLD STORAGE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13	KRF-0011	DONGWON F&B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14	KRF-0002	DONGYEONG COLD PLAZA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FS-EN-7/5845 from 20.05.2013
15	KRF-0010	EIYOH KOREA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16	KRF-0018	HANSUNG FOODS CO., 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17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18	KRS-0005	HONGJIN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19	KRS-0006	HONGJIN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20	KRS-0003	INSUNG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번호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21	KRS-0004	INSUNG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22	KRS-0007	INSUNG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23	KRS-0033	INSUNG GLOBAL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24	KRS-0034	IS GLOBAL CO.,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25	KRS-0001	KUM PYEONG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26	KRS-0002	KUM WOONG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27	KRF-0004	SAMJIN GLOBALNET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28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29	KRF-0015	SNB INTERNATIONAL CO.,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30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31	KRF-0017	TAEIL FOOD.,CO.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32	KRF-0006	TONG YOUNG FISHERIES Co., LTD	Fish and seafood	'14.9.22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33	KRF-0008	WOO SHIN COLD STORAGE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 28.11.2012
34	450-20	Wooil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 15.04.2009
35	KRF-0016	WOOIL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 27.01.2015

번호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36	160-18	Yusung mulsan co., Ltd	Fish and seafood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 상기 한국업체들은 '제한 없음' 상태임

☐ 냉동어류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번호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냉동어류	'15.7.27부터 수입허가	FS-NV-8/12788 from27.07.2015
2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Fish and seafood/ 냉동어류	'15.7.27부터 수입허가	FS-NV-8/12788 from27.07.2015

※ 상기 한국업체들은 '제한 없음' 상태임

☐ 신선·냉장·냉동 어류피레트 및 기타 어육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번호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Fish and seafood/ 신선·냉장·냉동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15.7.27부터 수입허가	FS-NV-8/12788 from27.07.2015

※ 상기 한국업체들은 '제한 없음' 상태임

- 동식물검역국은 각 국가마다 품목별 수입허가여부 상태를 다섯 가지 색깔로 구분하고 있으며 녹색,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나뉨
 - 녹색은 '제한 없음' 상태이며, 이는 현재 해당업체가 관리대상 상품을 아무런 금지나 부가적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노란색은 '실험실 관리 강화' 상태이며, 이는 수출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수출 상품 로트가 실험실 관리를 받기 위해 샘플 채취를 해야 함을 의미함

- 붉은색은 ‘한시적 제한’ 상태이며, 이는 해당 업체에서의 관리대상 상품 수출이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을 의미함
- 보라색은 ‘인증 중단’ 상태이며, 이는 해당 업체에서의 관리대상 상품 수출이 현재 수출국의 주무부처의 보고에 따라 중단된 것을 의미함
- 파란색은 실험실 관리 강화 상태에서 샘플 채취가 완료되었지만 현재 실험실에서 샘플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제4절 對러시아 수출업체 등록

1. 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64호, 2011.10.4)

가. 목적

- “對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64호, 2011.10.4)” 제7조에 따라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의 등록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나. 등록대상

- 식용농산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업체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등록현황 : 19개 품목, 48개 업체, 319농가 등록('12.10월 기준)

다. 등록 및 수출신고

- 업체등록
 - 수출업체는 “대러시아 수출업체 등록 신청”,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계획서”,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예정 신고서”를 수출업체 소재 aT 관할지사에 제출함

- 단,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예정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등록사항 변경
 - 수출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aT에 신고하여야 함
 - ① 수출업체명, 대표자의 변경
 - ② 농가의 추가, 취소, 재배면적의 증감, 재배품목 변경 등
 - ③ 수출 예정품목의 변경, 취소 등
- 수출신고
 - 수출업체가 식용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품의 재배지 또는 수출 단계에 대하여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가 가능하도록 업체 등록시 또는 수출 30 일전까지 aT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라. 수출업체 안전관리

- 수출업체는 러시아 통관 중 안전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해당 사실을 인정한 즉시 신고해야 함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농가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관련 문의처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팀(T.02-6300-1357)

대러시아 수출업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

업체명	한 글			
	영 문			
대표자	영 문		한 글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주 소	한 글			
	영 문			
연락처	전 화		FAX	
	사무실		휴대폰	
	E-mail			
사업개요	설 립 일			
	주요사업			
	비 고			

당사는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을 위해 위와 같이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제3장 관세제도

제1절 관세제도 일반

가. 개요

- ☐ 러시아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 공통관세율을 따르고 있고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 공통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함

나. 수입관세

- 수입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 혼합형으로 부과됨
- 기본 관세율은 4단계(5%, 10%, 15%, 20%)이며 평균관세율은 11%수준
- 고관세 품목으로는 설탕(40%), 담배(30%), 자동차(25%), 가금류(25%) 등
- ☐ 통관시 수입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관세 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임
 - 러시아는 HS(Harmonis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방식을 상품분류코드로 채택하고 있어 그에 따라 모든 상품은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됨
 - 관세동맹 출범으로 인해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연방 대외경제상품코드는

효력을 상실하고 관세동맹 대외경제상품코드(CU HS코드)가 발효되었으며,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경제상품코드(EEU HS코드)로 명칭이 변경됨

- 또한 러시아는 수입대상국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기준에 따른 106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고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최혜국세율을 부과함

- 단 CIS 회원국은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사탕, 알코올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CIS 회원국 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예외조치가 적용됨

구분	적용 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최혜국 지위 국가	기본관세율	EU 회원국 포함 129개국
개발도상국	기본관세율의 75%	한국 포함 106개국
저개발국	면세	정부령 413, 414호
최혜국 비대상 국가	기본관세율의 200%	

- 수입관세율은 원료, 반가공품, 완제품 순으로 높아지나 최고관세율과 최저관세율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임

- 2001년 최고관세율을 기존 30%에서 20%~25%까지 인하하고 품목분류를 단순화함
- 러시아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지 공장용도의 설비,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
- 2012년 8월 22일부로 러시아가 WTO에 정식 가입이 되면서 11%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2017년까지 7.8%로 낮출 예정임
- WTO 가입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었고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임

- 관세동맹 산하의 규제기관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중임. 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이 적용대상임
- 수입가격의 조작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종량세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관세로 징수함

다. 소비세(EXCISE TAX)

-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등
- 적용세율 : 20%~570%
-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부과함
 - 적용품목 :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 엔진, 승용차 등
 - 1998년 2월 18일부로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10~20% 인상됨

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18%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식료품, 어린이용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향후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의 제정 수입의 감소로 인해 아직까지 재무부와 경제통상개발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 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 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적용세율 : 세관신고가격의 18%,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10%

-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는 부가세 면제
- 2002년 1월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던 의약품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제2절 관세제도 변동사항

가.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수입관세율 조정

□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및 통합관세율 개정

- 2015년 7월 15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WTO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관세율과 통합대외경제상품코드(EEU HS코드) 개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체결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으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 2015년 1월 EEU 출범 이후 EEU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 조정 역할 수행
 - 회원국 관련 기관은 EEC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계, 수출입금지조치, 세이프가드 등 규제 공동 시행
- 2015년 9월 1일부터 HS코드 10자리로 이루어져있는 세부품목 4,061개에 대해 관세율 인하
 - 평균관세율 5%-5.3%, 식품 13.28%
- 주요 개정 내용 :
 - 2015년 9월 1일부터 일부 세부품목들의 수입관세율 변경 : 어류, 낙농품, 새의 알, 기타의 산 식물, 채소류, 과실류, 쌀, 식물성기름, 당류와 설탕과자, 코

코아, 조제품, 주스 등

※ 신규 식품 수입관세율은 Kati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7.do?menuCode=895&articleseq=27&pageIndex=4&searchCondition=&searchKeyword=&contseq=&country_code=&item_seq=&item_seq2=&item_seq3=&bbsid=1

- 2015년 12월 31일부터 일부 세부품목들의 수입관세율 변경 : 일부 냉동고등어와 땅콩조제품 등

HS코드	품목	'15.8.31 이전	'15.9.1 이후	'15.12.31 이후
0303541000	SCOMBER SCOMBRUS 또는 SCOMBER JAPONICUS종의 고등어, 냉동	5%, 최소 0.03유로/kg	4%, 최소 0.026유로/kg	3%, 최소 0.02유로/kg
0303549000	SCOMBER AUSTRALASICUS종의 고등어, 냉동	6%, 최소 0.036유로/kg	4%, 최소 0.026유로/kg	3%, 최소 0.02유로/kg
2008111000 2008119100 2008119600 2008119800	땅콩버터 기타 조제땅콩 볶은 땅콩 기타 땅콩(볶은 것 제외)	9.9%	7.3%	6%

□ 일부 품목 수입관세율 재조정

- 2015년 8월 2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WTO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EEU 통합관세율) 재조정
- ‘기타 산 식물’ 수입관세율 조정
 - HS코드 0602904900과 0602909100으로 2015년 9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은 “5%”로 하향 조정

HS코드	품목	'15.9.20 이전	'15.9.20 이후
0602904900	기타	15%	5%
0602909100	선인장류를 제외한 꽃봉오리 또는 꽃을 가진 현화식물, 온실용	15%	5%

○ ‘사과주스’ 수입관세율 조정

- HS코드 2009712002와 2009791903으로 2015년 9월 20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관세율은 “10%로 하되 최소세율은 1리터당 0.05유로”로 하향 조정

HS코드	품목	‘15.9.20 이 전	‘15.9.20 ~’ 16.8.31
2009712002	사과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설탕 첨가, 농축한 것,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 용량 40kg 이하의 통·탱크·플렉시탱크에 담겨있는 것)	15%, 최소 0.07유로/리터	10%, 최소 0.05유로/리터
2009791903	사과주스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농축한 것,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 용량 40kg 이하의 통·탱크·플렉시탱크에 담겨있는 것)	15%	10%, 최소 0.05유로/리터

나. 2016년도 수입 관세할당(Tariff quota)

□ 2016년도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입 관세할당

- 2015년 8월 18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6년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영역 반입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할당량 확정
-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관세영역 반입 농식품에 관세할당 적용
 -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생산 및 반입 상품은 제외
 - 적용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돼지잡육,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일부 유청 및 조제유청

(단위: 천 톤)

품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쇠고기	570	21	0	0	0.2
돼지고기 및 잡육	430	0	20	0	3.5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364	140	10.9	0	58
유청 및 조제유청	15	0	0	0	0.1

□ 2016년도 러시아 육류 수입 관세할당

- 2015년 11월 21일 러시아연방정부는 공급 국가별 2016년도 쇠고기(570천 톤), 돼지고기 및 잡육(430천 톤), 가금육(364천 톤) 수입 관세할당량 배분에 관한 결의 발표
- 러시아정부가 제정한 관세할당량 배분 절차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가 2013-2015년간 국내소비용 수입량에 비례하여 2015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수입 종사자들에게 관세할당량 배분
 - CIS국 생산 및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은 산출 물량에서 제외
-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간 관세할당량 내에서 수입 라이선스 발급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 라이선스 발급 및 거절 결정
 - 라이선스 유효기간 : 발급일(2016.1.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품목	관세할당량(천 톤)
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1) - 합계	40
	EU	29
	기타 국가	11
2	쇠고기(냉동)(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2) - 합계	530
	EU	60
	미국	60
	코스타리카	3
	기타 국가	407
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3) - 모든 국가	400
4	돼지 잡육(trimming)(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3 29 550 2, 0203 29 900 2) - 모든 국가	30
5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7) - 합계	364
	* 닭의 뼈없는 육(냉동)(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7 14 100 1) - 합계	100
	EU	80
	기타국가	20
	* 냉동한 닭 도체의 절반 또는 사분도체로 안에 뼈있는 것, 냉동한 닭다리 및 그 절단육으로 안에 뼈있는 것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7 14 200 1, 0207 14 600 1) - 모든 국가	250
	* 칠면조의 뼈없는 육(냉동), 칠면조 도체의 뼈있는 부분(냉동)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7 27 100 1, 0207 27 300 1, 0207 27 400 1, 0207 27 600 1, 0207 27 700 1) - 모든 국가	14
	*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7, 단,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0207 14 100 1, 0207 14 200 1, 0207 14 600 1, 0207 27 100 1, 0207 27 300 1, 0207 27 400 1, 0207 27 600 1, 0207 27 700 1은 제외함) - 모든 국가	0

□ 2016년도 러시아 유청 수입 관세할당

- 2015년 11월 19일 러시아연방정부는 2016년도 유청 수입 관세할당량 배분에 관한 결의 발표
- 2016년 러시아 유청 수입 관세할당량은 15천 톤
 - 적용 품목 : EEU HS코드 0404 10 120 1, 0404 10 160 1로, 유청 및 일부 조제유청(분말, 입자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추가하지 않은 것에 한함)
- 관세할당량 배분 절차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가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간의 유청 수입량에 비례하여 수입업체에게 배분
 - CIS국 생산 및 수입 유청은 산출 물량에서 제외
-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간 관세할당량 내에서 유청 수입 라이선스 발급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라이선스 발급 및 거절 결정
 - 라이선스 유효기간 : 발급일(2016.1.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

가. 식품표시제도

- ☐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소비자용 패키지에 포장되어있는 자국 식료품과 수입 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아 지역에서 도·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음
-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가표준위원회(GOSSTANDART)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2003 ‘식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일반요건’, 2005.6.30)에 의거하여 모든 러시아의 수입제품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음

나. 상품설명서

-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음
 - 제품명,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러시아어로 첨부해야함
 - 해당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함
- ☐ 상품설명서에는 다음 8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주소

다. 제품라벨

☐ 러시아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라벨링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라벨링의 요구조건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제품에 맞는 특정한 라벨이 무엇인지, (식품 첨가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모든 조제약품들의 경우에서처럼) 추가적인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러시아의 라벨링 관련 법규는 기존의 EU의 지침들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의 관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

☐ 기본 기재사항

- 제품명
- 제조업체(업체명, 국가, 법적 등록 주소)
- 제조업체의 상표(있을 시에)
- 제품의 순중량 혹은 양 혹은 수량
- 제품의 구성성분
- 제품의 영양가(칼로리, 단백질·지방·탄수화물·비타민·다량영양소·미량원소의 함량)
- 사용 용도와 방법(어린이식품, 다이어트식품,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의 경우)
- 즉석섭취식품 조리법에 대한 권고사항(농축 및 반가공품 식품의 경우)
- 유효기간
- 식품의 보관 방법 및 보관기간
- 식품의 판매 기간
- 제조일과 포장일

- 제품 제조 시에 의거해서 만든 적용된 규범서류
- 적합성 인증에 관한 정보(GOST R 인증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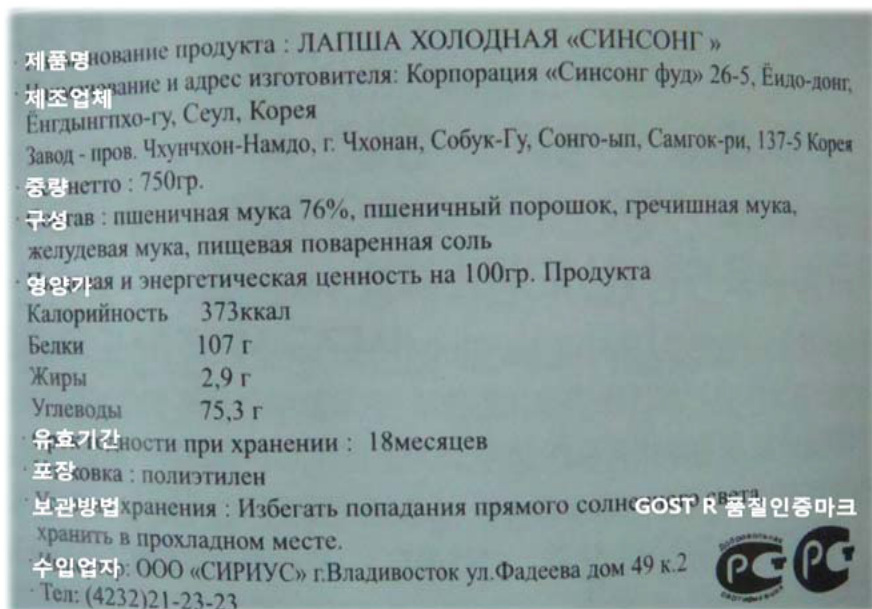
☐ 추가 기재 사항

- 냉장(냉동)된 육류,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함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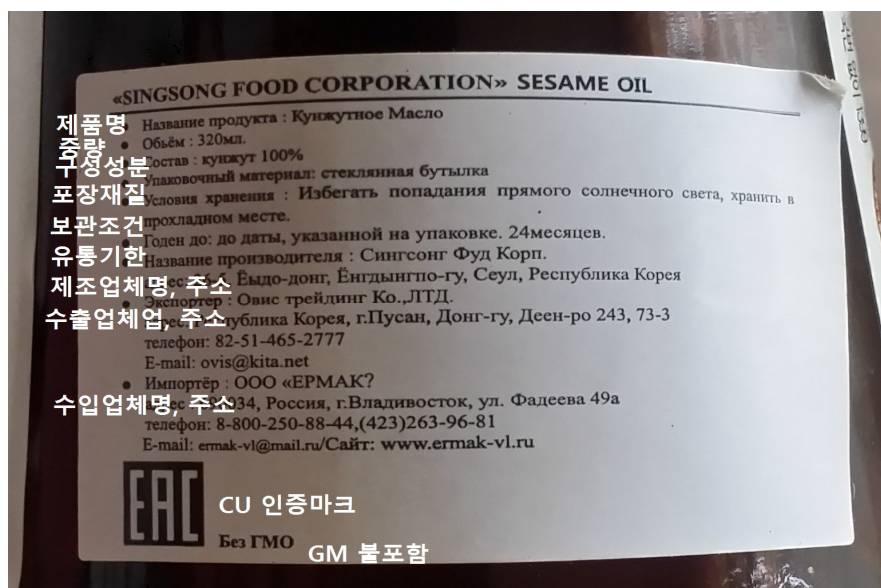
☐ GOST R 51074-2003은 아래의 표시를 요구함

-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첨가물, 착향료, 비의도적 생성물질
-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원료를 함유하는 식품

[예시]1. 구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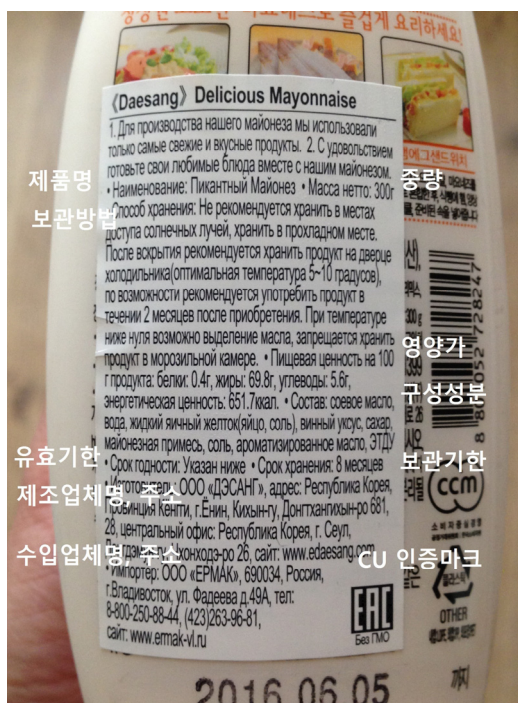
[예시]2. 현 라벨링



[예시3. 현 라벨링]



[예시4. 현 라벨링]



라. 영양성분표시

- ☐ GOST R 51074-2003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며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모든 특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 제품에 들어있는 기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량표기 없이 나열 할 수 있음
- ☐ 일일권장섭취량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함
 - 100g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는 칼로리가 일일권장섭취량의 2%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함
 - 100g당 미네랄, 비타민이 일일권장섭취량의 5%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함

마.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변형) 식품표시

- ☐ 러시아는 다음의 15개 GM 식품을 관리하고 있음
 - 콩 3종류, 옥수수 8종류, 사탕수수 1종류, 감자 2종류, 쌀 1종류
(자세한 내용은 2009년 포스트의 GAIN 생명공학 연례보고서 참조)
- ☐ GM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내용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야함
 - GM 미생물이 직접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임”을 표시
 - 비활성 GM 미생물이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표시
- ☐ 단, GM 원료의 함량이 0.9% 미만일 경우는 자연혼입으로 간주되어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1. 주류

- ☐ 주류제품에 대한 라벨요구사항은 연방법 171과 국가 표준 GOST R 51074-2003 및 GOST R 52194-2003에 표시되며 보드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가 적용대상이 됨
- ☐ 모든 수입 제품의 대부분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필요함
 - 모든 주류제품은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된 식품첨가물, 비 전통적인 재료, 생명공학기술에서 파생 된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등을 표기해야함
 - 맥주 : 맥주의 종류(light, semi-dark, dark), 알코올 % 함량(무알콜 맥주와 아로마와 맛이 첨가된 맥주는 제외), 에틸 알코올의 최소 비율, 병입 날짜, 기본 원료, 영양 구성
 - 와인 : 병입 시설, 병입날짜 또는 숙성날짜, 에틸알코올 비율, 당도(드라이와인 제외)
 - 스파클링 와인 :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와인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 알코올 음료 - 에틸 알코올 함량, 설탕 농도(설탕이 재료로 사용된 경우), 병입 날짜, 구성 (맛과 제품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목록 포함),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제품의 유통기한
- ☐ 2007년 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경고가 과도한 음주의 건강 위험에 대한 라벨에 표시해야함

2. 육류 및 가금류

- ☐ 냉동 가금류 고기, 부산물, 소비자편의제품, 소시지 또는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해야함
- ☐ 진공팩이나 MGM 가스팩으로 포장된 경우 가금류 고기, 소비자편의제품, 요리재료, 소시지, 고기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함
- ☐ 캔 제품은 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의 성분함량을 표시해야함

3. 과채류 및 감자

- ☐ 포장된 모든 신선 과채류와 감자는 제품명, 제조업체자명(법적 등록주소, 국가), 제조업체 상표(있을 시에), 순중량 혹은 양, 품종, 상품품종(있을 시에), 제품가공법(필요할 시에), 홍보적 성격의 정보(필요할 시에), 수확일과 포장일, 온실재배여부, 보관법(필요할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 베리, 과실, 채소, 감자의 가공품(캔 제품 포함)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된 제품의 비중(시럽, 마리네이드, 염수장으로 조리된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채소 혹은 과실의 비중(넥타 및 음료의 경우), 식품 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 제품 영양가, 감미료 함량, 보관기간(건조된 베리, 과실, 채소, 감자의 경우) 등을 표시해야 함

4. 차, 커피, 차음료 및 커피음료

- ☐ 차와 커피의 명칭은 원산지로 보충될 수 있으며 입상차는 ‘입상’이라고 명칭가능
- ☐ 차, 커피, 차 및 커피제품 제조 시에 향미증진제가 사용된다면 향을 명칭할 수 있음(예를 들어, 레몬향의 홍차)

- ☐ 차, 차음료, 커피음료의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커피의 경우 보관기간을 표시해야 함
- ☐ 진공포장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 일회용 티백, 커피백, 차음료 및 커피음료 백은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상표(있을 시에), 제품명, 순중량, 품종(있을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를 표시해야 함

5. 식용 소금

- ☐ 제조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제품명을 표시해야 함(예를 들어, 증발소금, 암염, 침전소금)
- ☐ 제조업체(명칭, 국가, 법적등록주소), 제조일과 포장일, 품종, 순중량, 제분방법, 식품 첨가물,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 정보를 표시해야 함
- ☐ 포대 혹은 포대에 붙은 라벨에는 제품명, 순중량을 표시해야 함
- ☐ 요오드 첨가한 소금의 경우 첨가된 요오드의 형태, 요오드 함량, 일일권장량, 유효기간, 문구(유효기간이 지난 요오드 첨가한 소금은 일반식염으로 사용함이라는 문구) 등의 부가정보를 표시해야 함

6. 종자

- ☐ 소매유통 용도의 종자 패키지에 있는 라벨링에는 종자 판매자(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입각한 식물명과 품종명, 품종품질과 파종품질에 대한 표준(기술요건) 표시, 로트 넘버, 패키지에 들어있는 종자의 수량(개) 혹은 무게(그램), 판매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 ☐ 패키지(팩)에 명시되어 있는 로트 넘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트 넘버는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넘버와 일치해야 함
- ☐ 식물이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등록부는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판매 및 사용이 허가된 품종에 관한 목록임. 품종개량업자들이 만들고 품종테스트구역에서 생산력,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을 검증 받은 새로운 품종들이 매년 등록부에 올라가고 있음. 관련 정보는 러시아연방 국가품종개량성과테스트 및 보호위원회 사이트(<http://www.gossort.com/>)에서 참조

7. 팜유함유제품

- ☐ 러시아정부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 라벨링 규정을 변경할 계획
- ☐ 러시아 농업부는 관세동맹의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 개정안을 올해 12월 1일까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전달해야 함
- ☐ 현재 계획 중인 개정안 내용
 - 유라시아경제연합 내에서 팜유함유제품에 강제 라벨링 도입
 - 팜유함유제품 또는 팜유를 사용하여 제조된 유지방 대용물 함유제품은 라벨링에 표시해야 함. 상표 또는 패키지 앞면에 “제품은 팜유를 함유하고 있음” 표기
 - 생산자들은 식물성유지와 기타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라벨링에다가 ‘유제품’ 및 ‘우유성분제품’이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음. 성분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는 상품들은 앞으로 ‘유제품’ 단어 사용 금지
 -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지방(비유지방 포함) 함량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큰 글꼴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상표 또는 패키지의 정보 적는 부분 면적을 확대해야 함

- 팜유 함유에 관한 정보 표기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의 굵은 활자로 기재해야 하며 상표 또는 패키지 앞면 총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제품성분 및 라벨링에 관한 기술규제 요구사항 위반 시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개정내용을 2016년 3월 31일까지 러시아행정위반법에 포함시킬 계획

8. 환원우유 및 우유음료

- 2015년 9월 2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에 명시되어있는 용어, 조항, 라벨링 요건에 관한 공식 해설 발표

- 환원우유(환원유, reconstituted milk), 우유음료(유음료, milk beverage)에 대한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음

- ‘환원우유’ 정의 : 농축유·응축유 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소비자 용기에 중량 포장된 유제품 또는 우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료(마시는 우유 제외)
- ‘우유음료’ 정의 : 우유 및(또는) 우유성분 및(또는) 유제품으로 제조된 유제품 또는 우유성분제품을 의미하며, 농축유 및(또는) 응축유 및(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것도 포함됨. 우유성분을 대체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그 밖의 유제품 또는 우유가 아닌 성분을 첨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우유단백질 함량이 2.6% 이상, 탈지분유 함량이 7.4% 이상인 것(유제품의 경우)
- ‘건조우유가공품’ 정의 : 건조물질의 질량 비중이 90%에 이를 때까지 우유에서 수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우유가공제품

- 라벨링 요건에 따르면, 환원우유의 명칭을 만들 때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주원료를 직접적으로 명칭에 넣어줘야 함

- ‘분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분유 및 응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농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식으로 명명
- 동일한 크기의 글꼴 사용

제3절 라벨링 사례

1. 2015년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가. 중국산 넥타, 꿀, 호박

- 중국산 신선 넥타와 꿀, 호박 패키지에 라벨링 부재로 실험실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입 허용하기로 함. 수입업체에게는 벌금 부과 형태로 행정 처벌함
- 러시아연방으로 규제제품 반입 시 식물검역규정에 따르면, 과실류 및 채소류의 각각의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 수출업체 또는 재수출업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라벨링이 반드시 있어야 함

나. 미국산 냉동 가금육

- 미국산 냉동 가금육의 라벨링 정보에 영어 표기만 있고 러시아어 표기가 없어서 압류됨. 다음 공급 시에 관세동맹 기술규제 요건 준수하도록 명령
- 2011년 12월 9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에 의해 승인된 관세동맹의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와 ‘식품 라벨링 기술규제(TR CU 022/2011)’ 요건에 따르면 라벨링에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규정

다. 체코산 유제품

- 체코산 유제품 패키지에 체코어 표기만 있고 러시아어 표기가 없어서 반송 조치
- 관세동맹의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와 ‘식품 라벨링 기술규제(TR CU 022/2011)’ 요건 위반

라. 노르웨이산 냉동 연어

- 러시아를 경유하여 카자흐스탄으로 공급되는 노르웨이산 냉동연어 포장박스에 붙어있는 라벨링 교체 흔적이 적발되어 반입 금지, 반송 처리됨
- 현재 노르웨이산 연어는 러시아 수입 금지 상태여서 원산지를 감추기 위해 라벨링을 교제한 것임

마. 벨라루시산 냉동 쇠고기

- 벨라루시산 냉동 쇠고기의 라벨링에 제조업체명, 생산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반입 금지, 반송 조치됨

바. 종자

- 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판매관련서류들의 부재, 판매기간 만료, 라벨링 위반 등임. 종자 패키지에는 반드시 생산자 주소, 식물명과 품종, 로트 넘버, 판매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라벨링에 필수정보가 모두 다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제4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러시아연방세관 Federal Customs Service
 - www.russian-customs.org
- 블라디보스톡 항만공사 The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 www.vmtp.ru

- 보스토치니 항만공사 Vostochny Port
 - www.vpnet.ru
-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공사 Port of St. Petersburg
 - www.pasp.ru
- 러시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 <http://minzdrav.gov.ru>
- 러시아 농업부 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www.mcx.ru
- 러시아 기술표준청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STANDART
 - <http://www.gost.ru/wps/portal/en>
 - 한국SGS : www.sgsgroup.kr
- 동식물검역국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Rosselkhoznadzor
 - http://www.fsvps.ru/fsvps/main.html?_language=en
- 소비자권익보호 및 복지 감독국 Federal Service for Surveillanc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Rospotrebnadzor
 - <http://www.rospotrebnadzor.ru/en/>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USDA FAS GAIN Report
 - gener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s into Russia
 - <http://gain.fas.usda.gov>
- DHL Guide for DHL Express Dutiable Shipments to Moscow, Russia
 - http://www.dhl.com/en/express/shipping/customs_support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ita.net, www.kotra.or.kr
- Kati 농수산물무역정보
 - www.kati.net

제5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절 2015년 검역 불합격 사례

1. 2015년 검역 불합격 사례

- '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연방 내에서 검역 불합격된 수입산 식품의 문제 사례와 후속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음

가. 시사점

1) 식물병해충·잡초

- 규제대상인 식물성산물 상당수가 병해충, 잡초 검출로 인해 반입 금지, 폐기,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함. 식물성산물 반입 시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검역대상(식물병해충·잡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이 없어야 하고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검역대상 검출 시에는 규제제품 반입 금지 또는 세관경유 통관절차에 규제제품 배치 금지 또는 조건에 적합한 규제제품만 반입 허가 등의 결정을 내림
- 2015년부터 신규 검역대상(병해충·잡초) 목록이 발효 중이니 해당 목록을 숙지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함
 - ※ 새로 발표된 '검역대상(식물병해충, 잡초) 목록'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노어) 또는 Kati(한글)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함 : <http://www.fsvps.ru/fsvps/laws/4126.html>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7.do?menuCode=895&articleseq=27&pageIndex=4&searchCondition=&searchKeyword=&contseq=&country_code=&item_seq=&item_seq2=&item_seq3=&bbsid=1

2) 농약 및 오염물질

- 기술규제에는 해당 품목별로 독소, 미코톡신, 벤조피렌, 방사성 핵종 및 해충에 대한 최대허용치가 규정되어 있음
- 러시아에서 승인하고 있는 농약과 승인 농약별 허용 기준치들을 사전에 숙지, 사용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

- 최근 러시아에서는 유전자 변형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문제가 심의 중이므로 식품 원료 선택 시 주의 요망

4) 곡물 및 곡물제품 패키지

- 패키지에 포장된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 반입 시에 패키지는 새것이어야 하고 통기성이 있어야 함
- 쌀, 팥 등 곡물 반입 시에 진공 패키지에 포장되어 있어 불합격 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5) 관련 서류

- 식품 수입 시 요구되는 관련 서류(식물위생증명서, 수의동반서류 등)를 모두 첨부해야 함
- 문서에 유효 기간이 있을 경우, 컨테이너 도착날짜보다 문서 유효기간이 더 길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제품 개별 패키지의 제품명/제품 HS코드/생산일/업체 등의 정보와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식품금수조치로 인해 수입 금지된 제품들이 위조 식물위생증명서로 제3국을 통해 반입되는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수출(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는 수출국(재수출국)의 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나. 월별 검역 불합격 사례

□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검역에서 문제가 된 한국 사례는 아래와 같이 4건 검색됨

월	지역검역국	품목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월	하바롭스크 크라이	녹두	한국에서 바니노 향으로 입항한 선박의 식품창고에 있는 녹두에서 <i>Callosobruchus</i> 속의 콩바구미 검출	출항 전까지 밀봉
7월	하바롭스크 크라이	콩	한국에서 바니노 향으로 입항한 선박의 식품창고에 있는 콩에서 <i>Callosobruchus</i> 속의 콩바구미 검출	출항 전까지 밀봉
8월	하바롭스크 크라이	콩	한국에서 바니노 향으로 입항한 선박 2척의 식품창고에 있는 콩에서 <i>Callosobruchus</i> 속의 콩바구미 검출	출항 전까지 밀봉
10월	연해주	대두, 녹두	한국과 중국에서 나호드카 향으로 입항한 선박 3척의 식품창고에 있는 대두와 녹두에서 <i>Callosobruchus</i> 속의 콩바구미 검출	감염된 제품은 열처리, 창고는 소독처리

(자료: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전러시아식물검역센터)

제6장 수출현안

제1절 식품금수조치 현황

1. 서방 식품 금수조치 1년 연장

- 자국 생산자 지원 및 서방 제재를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도입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 식품 금수조치가 2016년 8월 5일까지 1년간 연장됨
 - 2015년 6월 EU이사회가 2014년에 도입한 크림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 (크림산 상품수입금지, 투자금지, 일부 서비스 제공금지, 특정상품 및 기술 수출 금지 등)를 2016년 6월 23일까지 연장하자 러시아도 금수조치 연장
- 2015년 8월 6일부터 수입 금지되는 식품 목록은 기존 금지 품목과 유사함
 - 금지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식용설육, 어류, 갑각류, 우유, 채소류, 과일류, 소시지, 견과류, 탈유당을 포함한 모든 유제품(단, 탈유당은 치료 및 예방 용만 반입 허가) 등
 - 브라운송어의 치어, 굴과 홍합의 어린새끼 공급 금지 해제
- 2015년 9월 16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금지목록에서 ‘운동선수를 위한 전문식품’ 제외시킴. 단, 러시아체육부가 수입상품 용도 확인 시에 한함
 - 운동선수의 필수 보조제품 중 러시아에서 합법적 사용 및 유통되는 제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등록: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운동선수를 위한 전문식품’
 - 스포츠연맹에 따르면, 지역선수 및 스포츠애호가 수의 제외하고 국가대표선수만 고려해도 연간 1-1.3억 루블 어치의 전문식품 소비
 - 최신제품 생산국은 주로 독일,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 현재 러시아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당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운동선수를 위한 전문식품’도 금지목록에서 제외

EEU HS코드	수입 금지 품목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0202	쇠고기(냉동)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0210 중에서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육
0301 중에서	활어(대서양연어(Salmo salar)와 브라운송어(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의 치어 제외)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중에서, 030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굴과 홍합의 어린새끼 제외)
0401 중에서, 0402 중에서, 0403 중에서, 0404 중에서, 0405 중에서, 0406	우유와 유제품(치료 및 예방 식이요법 섭취를 위한 전문적인 탈유당우유와 탈유당유제품 제외)
0701(0701 10 000 0 제외), 0702 00 000, 0703(0703 10 110 0 제외), 0704, 0705, 0706, 0707 00, 0708, 0709, 0710, 0711, 0712(0712 90 110 0 제외), 0713(0713 10 100 0 제외), 0714	채소류, 식용의 뿌리와 괴경 (씨감자, 씨에서 자란 알양파, 파종용 하이브리드 단옥수수, 파종용 완두콩 제외)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실류와 견과류
1601 00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함)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1901 90 110 0 중에서, 1901 90 910 0 중에서, 2106 90 920 0 중에서, 2106 90 980 4 중에서, 2106 90 980 5 중에서, 2106 90 980 9 중에서	식품 또는 조제품(생물학적 활성첨가물, 복합비타민-미네랄, 향미첨가제, 동물성 및 식물성의 농축단백질과 그 혼합물, 식이섬유, 식품첨가물(복합첨가물 포함) 제외)
1901 90 990 0 중에서	치즈생산기술로 만들어지고 유지방 1.5%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 또는 조제품

○ 식품금수조치 대상국 5개국 확대

- 2015년 7월 말에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그루지야가 2014년에 이어 유럽의 경제제재 결정에 또다시 가담하자, 러시아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함

- 우크라이나의 경우, 키예프 정부가 EU와의 경제부문협정을 지지할 시에만 금수조치 발효될 예정
- 식품금수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제3국을 통해 제재제품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15년 8월 6일부터 러시아로 반입되는 제재국의 원료 및 식품을 폐기처분하기로 결정
 - 폐기처분 대상: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국가 혹은 이에 동조하는 국가의 원료 및 식품
 - 담당기관: 연방관세청, 동식물검역국,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
- 금수조치 도입 이후 러시아는 상품 부족과 가격 인상을 피하고자 수입금지제품 대체제품 모색
 - 외국 및 러시아생산자들이 유럽생산자의 빈자리에 들어와 러시아 시장에서 새로이 입지 구축
 -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이란, 세르비아, 남미국가(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등이 수출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러시아당국과 접촉 시도
 - 동식물검역국은 수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 제품 반입허가 발행
- 식품 금수조치가 2016년 8월 5일까지 1년간 연장된 현시점에 한국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러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해야 함

2. 터키 식품 금수조치 도입

- 2015년 11월 24일 터키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피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국가안전보장 조치와 관련해 터키를 상대로 일련의 특별 경제제재조치를 적용한 칙령에 서명함
- 푸틴 대통령이 터키 상품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령한 가운데, 러시아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터키에서 러시아로 반입 금지되는 제재상품목록 승인
 - 금지목록 : 채소류, 과일류, 가금육, 소금 등

- 터키를 다녀오는 러시아인들이 유라시아경제연합 반입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적 용도 반입은 예외로 인정

EEU HS코드	수입 금지 품목
0207 14	닭 도체의 부분 및 식용설육, 냉동
0207 27	칠면조 도체의 부분 및 식용설육, 냉동
0603 12	카네이션, 신선
0702 00	토마토, 신선 또는 냉장
0703 10	양파 및 샬롯양파, 신선 또는 냉장
0704 10	꽃양배추 및 브로콜리, 신선 또는 냉장
0707 00	오이, 신선 또는 냉장
0805 10	오렌지, 신선 또는 건조
0805 20	귤(탄제린, 세트수머 포함), 클레멘타인, 윌킹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신선 또는 건조
0806 10	포도, 신선
0808 10	사과, 신선
0808 30	배, 신선
0809 10	살구, 신선
0809 30	복숭아(넥타 포함), 신선
0809 40	자두, 가시자두, 신선
0810 10	딸기, 신선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 포함),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 불문)

- 상당수의 채소류, 과실류, 쇠고기, 유제품, 어류가 금수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러시아 레몬 수입규모에서 터키 비중 90%, 농어와 지중해 돔 판매규모의 90%가 터키산인데도 불구하고 금지목록에 불포함
- 이번에 발표된 터키산 금지 품목은 다른 국가 또는 러시아 생산업체에게서 쉽게 공급 대체가 가능한 제품들만 블랙리스트에 들어감

- 러시아 전체 수입규모에서 터키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하지만, 특히 계절 식품 부문에서 터키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 러시아 채소류 및 과실류 수입에서 터키 비중은 20%, 채소류 및 과실류 소비에서 10% 차지
 - 특히 터키산 토마토와 포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으로 러시아 토마토 및 포도 수입의 41% 차지
- 터키를 겨냥한 이번 제한조치로 인해 러시아내 인플레이션이 1.5-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겨울철에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됨
- 러시아정부도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감안해서 수입금지 상품 가격 인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공급 증대 조치를 취할 것을 농업부와 산업통상부에 위임함
- 러시아의 터키 제재로 인해 터키가 입을 손실이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터키 경제는 0.3-0.7%p 감축할 것으로 평가됨

3. 특별식물위생체제 도입

- 2015년 12월 7일부터 동식물검역국은 특별식물위생체제를 도입함. 이는 벨라루시를 통한 반입을 포함하여 원산지 불명의 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식품 금수조치에 해당되는 규제제품이 위조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채 루트를 변경하여 벨라루시를 통해 반입되는 상황이 심각해졌고 벨라루시에서의 공급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임. 이에 러시아 당국은 벨라루시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할 예정임
 - 사리에 맞지 않는 물류경로(이스라엘→체코→리투아니아→벨라루시→러시아, 브라질→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벨라루시→러시아)를 통해 러시아로 제품을 반입하는 수많은 차량 억류됨('15년 400대 이상)

- 중국산 제품을 먼저 리투아니아로 운송하고 그 다음에 벨라루시를 통해 러시아로 공급하기도 함
- 특히 동식물검역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터키산 제품이 벨라루시를 통해 반입될 가능성에 우려
- 동식물검역국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국가 및 제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원산지 국가 제품의 공급을 특별히 통제할 예정

신고된 원산지 국가	통제 품목
모로코	신선 버섯, 사과, 배, 딸기, 당근, 감
터키	사과, 버섯, 배추, 키위, 오이, 토마토
이집트	가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허브
이스라엘	라스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마케도니아	신선 버섯, 신선 파프리카, 배, 키위, 애호박
에콰도르	복숭아, 넥타, 배
남아프리카공화국	배, 사과, 무
중국	양상추, 배(콘페렌츠), 사과
브라질	배, 가지, 커런트, 딸기, 블랙베리, 라스베리
스위스	사과, 라디키오(Radicchio)
멕시코	배, 사과